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姜錫中

韓國의 對中國直接投資 擴大
方案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expansible plan for Korea's direct

investment in China



漢城大學校大學院

貿易學科

貿易實務專攻

金光培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姜錫中

韓國의 對中國直接投資 擴大
方案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expansible plan for Korea's direct
investment in China

위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2月 日

漢城大學校大學院

貿 易 學 科

貿 易 實 務 專 攻

金 光 培

金光培의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을 認準함

1994年 2月 日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目 次

第 I 章 序 論	1
第 1 節 研究의 目的	1
第 2 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2
第 II 章 海外直接投資의 意義와 理論的 背景	3
第 1 節 海外直接投資의 意義와 理論的 背景	3
1. 海外直接投資의 意義	3
2. 海外直接投資의 理論的 背景	5
3. 第 3世界 海外投資理論	11
第 2 節 海外直接投資의 戰略的 動機	15
1. 自然資源追求型	15
2. 市場 및 生産效率追求型	17
3. 知識指向型 및 海外用役型	18
第 3 節 韓國의 海外投資 現況	18
1. 業種別 動向	19
2. 地域別(國家別) 動向	21
3. 海外投資의 成果	22
第 III 章 中國의 投資環境分析	24
第 1 節 對外開放政策의 實施背景	24
1. 對內的 背景	25
2. 對外的 背景	33

第 2 節 中國의 直接投資誘致政策 및 制度	35
1. 外資導入政策	35
2. 外國人直接投資 誘致制度	39
3. 外換管理制度	42
4. 投資管理機構와 投資節次	45
5. 社會間接資本與件	47
第 3 節 外國人 直接投資現況	54
1. 類型別 投資現況	54
2. 國家別 投資現況	57
3. 地域別 投資現況	58
第 IV 章 韓國의 對中國直接投資의 問題點과 擴大方案	60
第 1 節 韓國企業의 對中國直接投資現況과 成果	60
1. 業種別 推移	61
2. 地域別 推移	63
3. 所有持分別 推移	64
第 2 節 對中國投資 事例	67
1. M 社의 沿革 및 對中國投資動機	67
2. M 社의 對中國投資의 問題點과 對應方案	69
3. M 社의 投資事例의 示唆點	71
第 3 節 對中國直接投資의 問題點과 擴大方案	73
1. 對中國直接投資의 問題點	73
2. 對中國直接投資 擴大方案	82
第 5 章 要約 및 結論	88
參 考 文 獻	91
ABSTRACT	94

表 目 次

〈表 II - 1〉	中國産 石炭・石油 導入現況	16
〈表 II - 2〉	原資材價格比較 (1992年末 현재)	16
〈表 II - 3〉	年度別 海外投資 推移	19
〈表 II - 4〉	業種別 海外投資現況	20
〈表 II - 5〉	우리나라 製造業의 10代 海外投資對象國 (1992년말)	20
〈表 II - 6〉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	21
〈表 II - 7〉	海外投資의 貿易 및 外貨稼得效果 (1992년)	23
〈表 III - 1〉	1953~1957年 中國經濟의 成長率	25
〈表 III - 2〉	第 1次 5個年計劃期間中の 主要工産品の 生産量과 成長速度	26
〈表 III - 3〉	1958~1962年の 農業生産狀況	27
〈表 III - 4〉	1961~1962年 重工業의 減少狀況	28
〈表 III - 5〉	1963~1965年 農工業의 生産狀況	29
〈表 III - 6〉	文化大革命 期間中の 年度別 平均成長率	30
〈表 III - 7〉	第 5次 5個年計劃期の 生産實積	31
〈表 III - 8〉	第 7次 5個年計劃期の 實積	32
〈表 III - 9〉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實積	38
〈表 III -10〉	外資導入制限 業種・品目 目錄	42
〈表 III -11〉	中國의 鐵道運送發展 推移	48
〈表 III -12〉	中國의 道路運送發展 推移	49
〈表 III -13〉	中國의 水上運送發展 推移	50
〈表 III -14〉	中國의 航空運送發展 推移	51
〈表 III -15〉	中・長期 에너지生産目標	53
〈表 III -16〉	企業形態別 直接投資導入 推移	55
〈表 III -17〉	業種別 直接投資現況	56
〈表 III -18〉	直接投資의 國家別 推移 (契約基準)	57
〈表 III -19〉	地域別 直接投資現況	58

〈表 IV - 1〉	우리나라 企業의 對中直接投資의 年度別 推移	61
〈表 IV - 2〉	우리나라 企業의 業種別 對中國直接投資 推移	62
〈表 IV - 3〉	對中國直接投資의 地域別 推移	63
〈表 IV - 4〉	所有持分別 對中直接投資 推移	65
〈表 IV - 5〉	投資規模別 推移	66
〈表 IV - 6〉	中國經濟現況 (1988~1991年)	74

第 I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오늘날의 國際經濟環境의 主要特徵은 EC, ASEAN, NAFTA 등 地域主義의 登場과 社會主義國家에서의 改革과 開放의 進展으로 東西間의 經濟交流가 擴大되고, 各國이 開放經濟體制로 轉換하는 등 急速度로 變化하고 있다.

韓國은 外的으로는 先進國의 保護貿易과 輸入開放, UR, 通商摩擦 등과 內部的으로는 勞使紛糾, 賃金引上 등으로 輸出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우리에게 國內經濟活性化를 위해서는 새로운 市場을 開拓해야 할 必要性이 增加하고 그 一環으로 中國市場은 韓國企業들의 輸出地域 多變化의 最適地域으로 注目받고 있다.

이런 中國은 1949年 10月 建國以來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構築하고 7次에 걸쳐 經濟 5個年計劃과 그 期間中 中·蘇間의 理念紛爭, 文化大革命, 毛澤東死亡, 天安門事件 등 對內外 重大한 事件을 겪으며 修正과 經濟構造를 改編·推進하였다. 1970年代初 美·日과의 關係改善과 더불어 亞細亞新興工業國(NICS)들의 經濟成長에 刺戟을 받아 社會主義現代化建設과 經濟管理의 分權化를 中心으로 1978年 經濟改革과 對外開放政策을 實施하였다. 그 後 經濟의 各 部分에서 많은 變化를 보여 왔으며 지난 13年間 中國經濟의 年平均 成長率은 9%를 記錄하였다.

韓國과 中國經濟交流는 1979年 對外開放政策을 本格化하면서 日本·香港 및 싱가포르 등을 經留地로 하는 間接交易이 始作되어 每年 增加하였다. 1992年 8月 24日 國交樹立과 더불어 兩國間의 經濟交流는 그 規模에 있어 急増하였고, 對中國直接投資도 刮目할 만한 增加를 보이고 있다.

이런 點에서 中國은 11億以上の 人口와 넓은 國土 및 豊富한 賦存資源, 老大的 市場, 그리고 商業化되지 않은 基礎科學技術을 保有하고 있어 經濟的 潛在力이 크므로 韓國의 政府主導 經濟發展經驗, 消費財供給能力과 産業技術과의 結合은 兩國間 經濟的 實利追求를 可能하게 해줄 것이다.

이에 本 研究에서는 中國의 開放政策의 背景을 살펴보고 中國의 直接投資政策 및 制度를 分析하여 外國人直接投資 및 韓國企業의 直接投資現況을 통해 韓國企業의 對中國直接投資에 있어 經濟的 側面과 經濟外的인 側面에서 發生할 수 있는 問題點과 留意事項을 考察하고 그에 대한 擴大方案을 模索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第 2 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本 論文의 研究方法은 주로 關聯文獻과 韓國貿易協會, 貿易振興公社, 産業研究院, 地域情報센터, 韓國銀行 등에서 發刊된 각종보고서를 入手 活用하였고 中國의 對外開放政策以前인 1949년부터 1978년까지의 統計는 李德彬 「中華人民共和國經濟史」에서 再引用했다. 그외 中國經濟에 관한 國內外的 研究論文, 月刊紙, 新聞, 雜紙 등을 參考로 하는 文獻的 研究·調査方法을 使用하였다.

이에 따라 本 論文의 研究範圍는 全 5 章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序論에 이어 第 2 章에서는 海外直接投資의 意義와 理論的背景을 考察하고 第 3 章에서는 中國의 直接投資環境을 分析하며 第 4 章에서는 韓國의 對中國直接投資의 問題點과 擴大方案을 提示하였다. 마지막으로 第 5 章에서는 以上の 內容을 要約·整理하고 結論을 맺었다.

第 II 章 海外直接投資의 意義와

理論的 背景

第 1 節 海外直接投資의 意義와 理論的 背景

1. 海外直接投資의 意義

海外直接投資는 一般的으로 純資本移動을 包含하는 概念으로 海外投資 (Foreign Investment) 또는 國際投資(International Investment)로 國際資本移動 즉, 國際間 長短期資金去來의 한 型態¹⁾으로써 利潤取得動機를 前提로 하여 資本, 技術, 經營管理能力 등 有型, 無型的 諸般經營資源을 複合적으로 海外로 移轉하여 實質적인 經營統制權을 行使하면서 海外事業을 營爲하기 위한 投資라고 定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가진다.

1) 海外直接投資는 不完全한 市場構造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完全競爭市場構造下에서는 企業은 資本에 대한 收益이 資本에 대한 機會費用과 같기 때문에 經濟利潤(economic profit)은 零이 된다. 킨들버거(C.P. Kindleberger)가 지적하였듯이 完全競爭下에서는 모든 市場이 自由競爭下에 놓여 있게 되고, 生産이나 마케팅에 있어서 外部壓力이 存在하지 않으며 또한 情報가 自由롭고 貿易

1) Kindleberger and Lindert, *International Economics*, Richard D. Irwin, Inc, 6th, ed., 1978., pp.454~455.

競争에 대한 障壁이 存在하지 않는다면, 國際去來에서는 貿易去來만이 存在하게 된다. 이러한 狀態下에서는 外國企業이 現地企業에 비해서 優位를 가질 수 없게 되며, 따라서 直接投資가 成立할 수 없게 된다. 製品市場의 不完全性, 要素市場의 不完全性, 國家間 規模의 經濟에서의 差異, 政府의 規制 등에 의해 惹起되는 投資國과 投資對象國의 市場間의 不均衡때문에 投資國企業은 現地企業을 능가하는 相對的인 競争優位를 갖게 된다. 따라서 相對的 利點을 確保하기 위해 海外直接投資가 이루어지는 것이다.²⁾

2) 海外直接投資는 利子나 流動性確保만을 指向하는 證券投資(Portfolio Investment)내지 間接投資(Indirect Investment)와는 달리 資本收入企業의 事業活動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치거나 이에 資本參加를 한 現地企業에 대하여 새로운 資本 또는 새로운 資本을 대신한 生産的 價値를 提供하는 目的이 있다.

따라서 直接投資에 있어서 단기적인 이익발생 可能性보다는 長期的 利益이 보다 중요한 문제이며 投下資本의 利子만을 目的으로 投資한 것은 直接投資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債券이나 分散株의 取得 등 모든 種類의 短期資本投資, 利子나 配當金爲主의 長期投資, 事業目的을 隋伴하지 않는 土地의 取得 등은 直接投資에 包含될 수 없다.³⁾

3) 海外直接投資는 經營學的인 面에서 볼 때 經營資本의 輸出임과 同時에 企業의 輸出이며 一國의 企業이 國內指向經營(Domestic Oriented Management)에서 國際指向經營(International Oriented Management)으로 轉換하는 것을 意味한다. 즉, 企業의 國際化過程으로서 國內企業에서 國際企業내지 海外企業(Overseas Enterprise)으로 發展함을 뜻한다.⁴⁾

2) C.P.Kindleberger, *International Economics*, 3rd, 1963., pp.404~405.

3) C.P.Kindleberger, *Ibid.*, pp.404~405.

4) 우리나라의 實定法上에 따른 海外投資는 現行 外換管理規定 第 15-2條에 서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⁵⁾ ① 外國에서 發行하는 證券에 應募하거나 發行된 證券을 取得하는 경우, ② 非居住者 또는 外國에 있는 者에 대하여 事業遂行에 必要한 資金의 貸付로 인한 證券의 發行 등의 當事者가 되는 行爲 또는 去來로서 相換期間이 1年以上인 경우, ③ 外國에 있는 不動産 또는 이에 관한 權利를 取得하는 경우, ④ 非居住者 또는 外國에 있는 者에 대하여 契約期間 또는 貸價의 領收期間이 1年을 超過하는 技術用役提供契約에 의하여 提供되는 技術 또는 用役의 경우, ⑤ 輸出品目的 引渡 또는 船積後 그 代金の 回收期間이 3年을 超過하는 延拂輸出의 경우로 海外直接投資만의 型態라고 보기 힘든 延拂輸出方法도 海外投資에 包含시키고 있어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區分이 明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海外直接投資는 資本의 限界收益이 낮은 國家에서 높은 國家로 移轉하다. 즉, 國家간의 限界收益率差異 때문에 相對國의 文化, 慣習, 言語差異, 地理的 條件, 現地政府의 差別政策 등 불리한 與件에도 投資企業들이 現地企業들에 비해 競爭的 優位를 維持하고 있기 때문에 海外直接投資는 發生한다.

2. 海外直接投資의 理論的 背景

海外直接投資를 說明하는 理論은 그 種類가 多樣하나 共通點은 모두 不完全市場原理에서 直接投資의 動機를 찾고 있다는 點이며 直接投資理論을 公式化하는 데에는 첫째, 國內投資理論을 살펴보고 바로 이러한 觀點에서 海外投資意思決定을 行할 때 企業이 考慮해야 할 事項을 檢討하는 것이다. 특히 相異한 國家간의

4) 津田昇, 輸出マ-ケテソフ論, 東京, 1974., p.214.

5) 外國換管理規定 第 15章(海外投資), 第 15-2條.

異種通貨와 換率, 關稅와 輸入쿼타, 直接投資에 影響을 미치는 租稅인센티브와 非인센티브와 같은 公共政策 등이 把握되어야 한다. 이러한 要因이 企業의 海外投資에 관한 意思決定에 미치는 效果가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市場構造의 不完全性을 보면, 企業들이 完全競爭市場條件을 따르지 않고 市場價格 등의 競爭條件을 統制하는 影響力을 갖고 있을 경우 獨占價格이나 寡占價格으로 利益이나 成長率을 相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경우이다.

本國市場에서의 製品差別化·特許權·著作權 등을 利用하여 競爭企業의 進入障壁을 設定한 企業들은 國內市場에서의 競爭力때문에 海外投資에 대한 意慾을 가질 수 있다.

(1) 貿易補完論

古典的 貿易理論에 있어서는 리카르도(D.Ricardo)의 勞動生産에서의 比較優位로 商品貿易을 說明하고 있는데 近代經濟學的 立場에서는 生産要素의 國際間移動을 前提로 하여 商品貿易을 單純히 勞動生産費比較에 의한 것이 아니고 資本, 原料, 技術을 包含한 生産要素結合의 比較優位가 이를 可能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킨들버거(C.P.Kindleberger)는 海外直接投資形態別로 첫째, 輸入을 增加시키기 위한 資源開發型投資 둘째, 輸出代替를 위한 市場指向型投資 셋째, 技術의 國際間移動을 目的으로한 技術投資로 海外進出要因이 發生한다고 主張했으며 먼델(R. A. Mhndell)은 사무엘슨(P. A. Samuelson)의 要素價格均等化定理을 根據로 貿易障礙가 生産要素移動의 인센티브를 創出함으로써 海外直接投資를 促進시

키게 된다고主張하였는데 結局 兩者는 모두 海外直接投資를 商品貿易과 代替내는 補完이라는 點에서 論議를 같이 하고 있다. 즉, 商品의 國際的 移動이 自由로울 경우 個別要素의 相對價格은 물론 絶對價格까지도 國際間에 均等化되므로 海外直接投資는 發生될 素地가 없지만 關稅, 輸出入(쿼터)設定 등 貿易障礙要因이 생기게 되면 海外直接投資가 促進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先進國에 있어서는 停滯産業때문에, 그리고 開途國에 있어서는 輸入代替를 위한 幼稚産業 때문에 關稅 및 그 밖의 人爲的 障壁을 높이는 경우 企業은 그 장벽을 넘기 위한 手段으로 直接投資를 選擇한다.⁶⁾

(2) 産業組織理論

直接投資理論을 産業組織理論의 觀點에서 檢討할 경우 指摘될 수 있는 點은 이 理論은 完全競爭狀態下에서는 成立되지 않는다는 點이다. 市場與件이 不完全競爭에 놓이게 되면 企業은 競爭企業에 비하여 優位點을 保有할 수 있고, 競爭的인 優位點을 效率的으로 利用하여 이 優位點을 利潤分岐點으로 轉換시킴으로써 그 優位點을 維持할 수 있다.

海外生産者에 비해서 그러한 優位點을 지닌 海外投資企業은 다른 海外進出方法이 있는 경우에도 直接投資를 통하여 그 優位點을 活用하는 것이 보다 有利하다는 것을 發見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優位點을 保護하기 위해서는 特許權이나 라이선싱 등을 통해서 優位要因을 利用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이러한 優位點에서 派生된 利得은 現地企業의 運營費用보다 높을 것이고 또한 그

6) 金 新, 國際經營學, 博英社, 1993.3., p.79.

利得은 海外經營에 進出하거나 運營했을 경우의 費用보다도 더 높아야 한다.⁷⁾

1) 獨占的 優位理論 (monopolistic advantages theory)

하이머(S. Hymer), 킨들버거(C. P. Kindleberger), 케이브스(R. Caves) 등에 의하여主張된 優位理論은 海外直接投資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外國費用을 負擔하고서도 現地國企業과의 競爭에서 이길 수 있는 企業特有的 優位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케이브스(R. Caves)⁸⁾는 가장 重要的 獨占的 優位要因은 無型資産(intangible assets)이라고 하여, 技術能力, 製品差別化能力을 포함한 마케팅能力, 經營能力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 優位要素는 特定企業에 限定되어야 하며 企業內에서는 國境을 넘어 쉽게 移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優位要素는 새로운 競爭企業에 대하여는 進入障壁을 形成하는 한편, 企業內部에서는 그 使用에 있어 公共材(public goods)와 같은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知識·情報 및 技術 등의 이러한 優位要素는 最初에 開發과 關聯된 費用 즉, 埋沒原價(Sunk cost)를 다시 發生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市場에서 潛在的으로 同一한 收益을 發生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追加的 使用에 따른 限界費用이 零이라고 할 수가 있다.

獨占的 優位要素를 保有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企業이 海外投資를 하게되는 것은 아니다. 海外直接投資를 통해 얻을 수 있는 收益이 다른 代案 즉, 輸出이나 라이선싱(licensing)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收益보다 높아야 한다.

2) 製品壽命週期理論

이는 技術優位에 바탕을 둔 產業組織理論의 非競爭主義에 따른 理論이다. 버

7) 金愛榮, “海外直接投資企業의 財務戰略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弘益大學校 大學院, 1990., p. 9.

8) R. E. Caves,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 1~3.

론(R. Vernon)의 製品壽命週期理論은 製品의 生産立地の 國際移動을 追求하면서 直接投資를 說明하고 있는데 우선 新製品은 주로 美國과 같은 高所得國家에서 開發되고 生産·販賣된다. 製品이 最初의 開發國에서 널리 認定된 후 이들 製品은 輸出에 의해서 다른 海外市場으로 紹介될 것이다. 또한 製品開發企業은 技術 및 潛在的 海外競爭者들에 대한 製品마케팅에 있어 보다 有利하게 된다. 一定한 時間이 經過하면서 製品需要가 急激히 增加하기 始作하고, 海外生産者도 製品을 販賣競爭할 수 있게 된다.

이 段階에 이르면 처음 製品을 輸出하던 技術開發國企業은 市場占有率을 維持하기 위한 措置로서 海外直接投資를 통하여 製品을 生産販賣하는 現地企業을 설립한다. 生産이 技術對象國으로 移動했기 때문에 貿易은 減少되거나 中止하게 되며 오히려 製品을 輸入하게 되고 生産立地移動은 完成되게 된다.

3) 市場內部化論

이 理論은 버클리(P. J. Buckley)와 카슨(M. Casson)에 의하여 提起된 것으로 특히 R&D, 마케팅, 勞動에 대한 訓練, 經營팀의 構成 등 生産以外の 여러 가지 生活活動이 考慮되어야 한다고 하는 바 이와 같은 企業活動은 相互依存的이며 中間生産物의 흐름과 密接한 關係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⁹⁾ 따라서 中間生産物은 單純한 半製品이 아니라 特許, 人的資本 등과 結合된 知識의 形態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中間生産物市場이 不完全한 경우 利潤極大化를 追求하는 企業은 그 中間生産物을 自體組織 안에서 內部化하게 되며, 이러한 內部化過程은 네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製品의 性格, 市場構造 및 規模의 經濟 등의 産業特殊性 둘째, 政治·經濟的인 國家特殊性 셋째, 地理上的 距離, 文化的 差異 등의

9) P. J. Buckley and M. Casson, *The Futur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New York: Holmes & Publishers, 1976.), pp. 37~38.

地域特殊性 넷째, 經營專門化 등의 企業特殊性에 속하는 知識要因(Knowledge Factor)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요인을 強調하고 있는데, 그것은 企業이 習得한 知識을 獨占的 優位를 利用하여 價格差別化를 통해 活用할 수 있으며 知識은 長期間의 研究開發을 통해서만 生産될 수 있다는 點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內部화가 國境을 넘어서 이루어질 때 海外直接投資가 發生하며 企業의 多國籍화가 進行된다. 內部化理論이 獨占的 優位論과 다른 점은 특별한 資源의 保有 그 자체가 優位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資源을 企業內에서 內部化하는 過程이 企業에게 優位를 준다고 보는 데 있다.¹⁰⁾

4) 折衷理論

지금까지는 海外直接投資를 市場不完全性에 起因하는 特定企業에 內部화된 諸生産要素의 優位 즉, 企業優位性を 지닌 生産特定企業에 한하여 直接投資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왔는데 이 見解로는 海外直接投資가 發生하는 絶對條件을 斷定할 수 없었다.

던닝(J.H. Dunning)은 貿易과 海外投資를 包含하는 國際生産 또는 國際經營參與라는 概念을 導入하여 企業은 企業特殊的 要素와 立地特殊的 要素에 의해 輸出 또는 直接投資를 選擇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前者는 國際經營學的 接近方法이며 後者は 國際分業論내지는 立地論的 接近方法으로 兩者를 綜合했다 하여 折衷理論이라 하였다.

또한 후드(N. Hood)와 영(S. Young)은 海外直接投資의 決定要因을 보다 完全하게 說明하기 위해서는 企業特殊的 要素뿐만 아니라 投資對象國의 企業活動與件 즉, 立地特殊的 要素도 考慮해야 한다고 하였다.¹¹⁾ 立地特殊的 要素로는 勞賃,

10) 방호열, 國際經營學, 法文社, 1993.3., p.177.

11) N.Hood and S.Young, "The Economic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市場規模, 市場의 成長速度, 發展段階, 現地企業의 競爭力 등 마케팅要素와 關稅, 非關稅障壁 등 貿易障壁과 投資對象國政府의 諸般政策을 들고 있다.

3. 第 3世界 海外投資理論

지금까지 살펴본 海外直接投資理論들은 주로 美國 및 유럽의 大規模 多國籍企業을 對象으로 한 先進國型 海外投資理論이었다. 그러나 最近에는 韓國·臺灣·홍콩·인도·브라질 등 주로 新興工業國을 中心으로 한 國家들의 多國籍企業을 既存의 先進國 多國籍企業과 區分하여 第 3世界 또는 開發國 多國籍企業이라고 한다.¹²⁾

이들은 1970年代 中盤以後 海外直接投資를 本格化하여 그 活動이 增大하고 있는데, 本國보다 技術水準이 낮은 國家뿐만 아니라 先進國市場에도 直接 뛰어들어 現地工場을 設立함으로써 先進國企業과 競爭을 하고 있다. 이런 第 3世界 多國籍企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重要的 特徵을 가지고 있다. 첫째, 第 3世界 多國籍企業은 一般的으로 現地國政府의 要求條件, 특히 合作投資條件에 부응하려는 性向이 높다. 둘째, 海外子會社經營에 있어서 投資對象國에 相當히 많은 權限을 賦與하고 있다. 셋째, 海外直接投資의 對象地域이 大部分 開發國이다 (이는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 多國籍企業이 大部分 先進國에 投資를 하는 것과 對照를 이루고 있다) 넷째, 第 3世界 多國籍企業은 隣接國家에 投資를 하는 傾向이 높다. 다

London: Long-man, 1979., pp. 58~59.

12) 방호열, 前掲書., pp. 190~192.

셋째, 第 3世界 多國籍企業은 大部分 既存輸出市場에 關稅 또는 非關稅障壁이 設置되거나 先進國企業의 進出이나 現地國企業의 成長으로 輸出市場이 威脅받게 됨에 따라 既存市場을 防禦하기 위한 手段으로 海外直接投資를 한다.

(1) 웰스(L.T.Wells)의 接近方法

웰스는 던닝의 折衷理論을 利用하여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現況을 說明하고 있는데 이는 先進國의 海外直接投資現況을 說明하기 위해 開發된 理論을 開途國에도 適用하여 보려는 觀點이다.

그에 의하면 開途國企業은 開途國實情에 맞는 中間水準의 技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小規模市場에 대한 適應度가 높으며, 生産工程에 伸縮性이 있기 때문에 現地에서의 市場適應度가 높다. 이것은 開途國企業들의 自國市場이 小規模이고 價格彈力性이 높은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에 적응하기 위해 勞動集約的인 工程과 製品을 開發하고 輸入原資材를 國產原資材로 代替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結果이며, 이러한 過程에서 蓄積된 經驗과 技術은 社會, 經濟的 環境이 비슷한 投資對象國, 後開途國에서의 適應力을 높여 주며 또한 그들의 必要에도 適合하기 때문에 現地企業이나 現地に 進出した 先進國의 多國籍 企業에 대하여 競爭優位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¹³⁾

그러나 이러한 競爭優位는 그 屬性上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成文化시키기도 困難하여 海外直接投資를 통해 活用하는 것이 有利하다는 것이다. 특히, 開途

13) L.T.Wells, Jr., *Third World Multinationals: The Rise of Foreign Inves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83.), pp. 3~4.

國 企業의 경우 立地的 優位要因이 重要한데 企業特有的 優位要因이 없더라도 外國費用을 줄일 수 있는 方案만 마련된다면 成功的으로 海外直接投資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 기디(Giddy)와 영(S.Young)의 修正理論

기디(Giddy)와 영(S.Young)은 先進國의 海外直接投資現象을 說明하기 위해 開發된 理論을 修正하여 開發國의 海外直接投資現象을 說明하려는 入場으로 規模가 작고 技術上的 優位가 크지 않은 企業이라도 有利的 立地特有的 要素가 作用하면 海外直接投資가 可能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企業은 企業特有的 獨占的 優位가 낮기 때문에 海外現地活動에 드는 費用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만 海外直接投資가 可能하다는 것으로 費用節減의 方法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¹⁴⁾ 첫째, 現地파트너와 合作投資로 現地情報募集費用을 節減하고 投資에 必要的 資金負擔을 줄인다. 둘째, 競爭構造와 類型을 잘 알고 있으며 同一部門의 投資對象國企業이 主要競爭者가 될 海外市場에 投資한다. 셋째, 下請母企業이 이미 進出하고 있는 등 安定的인 市場이 保障되어 있는 곳에 投資한다. 넷째, 租稅回避가 可能하거나 利子補填 등과 같은 投資誘因을 提供하는 나라에 投資한다. 다섯째, 言語나 文化가 投資國과 類似的인 國家 또는 地理적으로 가까운 나라에 投資한다. 여섯째, 投資國보다 經濟적으로 低開發狀態에 있어 現地競爭의 強度가 낮은 國家에 投資하는 方法이다.

14) 許俊榮, “韓國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5., p. 21.

(3) 고지마(Kojima)의 海外直接投資理論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를 說明하기 위해서는 先進國의 海外直接投資와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에서 나타나는 現況自體가 다르기 때문에 別途의 獨自的인 理論이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즉, 勞動集約적이고 標準화된 技術分野의 中小企業에 의한 對開途國投資가 中心을 이루고 있는 日本型 海外直接投資는 投資動機面에서 巨視經濟的要因이 보다 重要하고 海外現地活動에 必要한 競爭優位도 政府支援이나 投資對象國의 投資誘因과 같은 巨視經濟政策的 誘인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에 個別企業次元에서 企業特有的 獨占的 優位에 基盤을 두고 있는 微視的 接近方法의 先進國型 海外直接投資理論으로는 適切히 說明되지 않는다고 主張한다.¹⁵⁾

이러한 觀點에서 海外直接投資理論을 展開한 고지마에 의하면 海外直接投資는 自國에서 이미 比較劣位에 있거나 比較劣位에 접어들고 있는 産業, 限界産業이라고 할 수 있는 分野부터 順次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日本型の 海外直接投資는 自國이 相對적으로 比較劣位産業을 移轉하고 또 移轉시킨 後에는 現地國에서 그 産業이 比較優位産業으로 土着化될 수 있도록 계속 推進함으로써 結果적으로 兩國間의 國際貿易을 擴大시키는 方向으로 寄與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日本의 斜陽産業을 開途國에 移轉시키는 過程을 美化한 것에 불과하다는 批判과 더불어 先進國과 開途國間에 좁혀질 수 없는 間隔을 暗黙적으로 認定하고 있다는 點에서 問題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早晚間에 닥쳐올 投資撤收를 어떻게 處理하는가 하는 問題이다. 왜냐하면 現地에서 撤收한 企業이 比較優位를 누릴 수 있는 國家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開途國에 進出した 中小企業型 投資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¹⁶⁾

15) Kojima, K., *Direct Foreign Investment: A Japanese Multinational Business Operations*(London : Croom Helm), 1978, pp.9~19.

第 2 節 海外直接投資의 戰略的 動機

海外直接投資의 動機는 資本剩餘의 成長力을 背景으로 하거나 아니면 보다 높은 利潤追求의 過程에서 發生한다고 할 수 있으며 海外直接投資의 戰略的 動機를 보면 自然資源追求型, 市場追求型, 生産效率追求型, 知識追求型, 海外用役追求型 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

1. 自然資源追求型

石油, 鑛物, 農産物, 林産物 등의 第 1次 原資材를 現地保有國에서 抽出하여 海外에 輸出하거나 現地에서 加工하여 販賣하기 위한 投資動機를 뜻한다.

1960年代末에서 1970年代初에 資源民族主義의 憵頭로 資源保有國들이 잇달은 國有化宣言과 自國에 더 많은 몫의 配當을 要求함에 따라 Oil Shock 등을 經驗한 資源輸入國에게는 安定的 原資材確保의 必要에 따라 資源確保型 投資를 하게 된다.

한편 資源確保型 投資를 위한 競爭的 優位는 規模의 經濟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石油, 알루미늄, 銅 등 主要資源이 世界的 大企業인 몇몇 會社에 의해 支配되는 寡占狀態에 있으며 莫大한 投資規模로 인해 後發者가 쉽사리 競爭的 規模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寡占競爭의 特性上 새로운 參與者의 直接的인 原料獲得機會를 源泉적으로 封鎖해 버리기 때문에 國內市場을 내세워 先發會社들과 合作 投資를 통한 迂廻的 競爭方法도 模索해야 할 것이다.

16) 金柄淳,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 經營과 技術뉴스, 1989., 通卷 第 23號.

原料의 安定的 確保라는 側面에서 韓國은 中國과 輸送距離가 가깝고 價格이 低廉한 利點을 活用하여 石炭·石油 등을 中心으로 資源을 導入함으로써 國內需給 不均衡解消와 價格安定에 寄與하고 있다. 이런 原資材의 輸入은 < 表 - 1 >에서와 같이 계속 增加되고 있는 趨勢이며, 價格面에서도 < 表 - 2 >에서와 같이 原油는 WTI油에 비해 배럴당 4.62달러, Brent油보다는 3.96달러, 사우디油보다는 1.51달러 低廉하며, 無煉炭의 경우 中國産이 國際價에 비해서 톤당 0.19달러 低廉하다.

< 表 II -1 > 中國産 石炭·石油 導入現況

	物 量			金 額 (百萬 달러)		
	1990	1991	1992	1990	1991	1992
石油 (千 배럴)	7,209	7,551	12,436	126	118	214.6
有煉炭 (千 톤)	2,711	3,229	3,398	126	149.8	180
無煉炭 (千 톤)	706	1,023	492	32	41.3	24.4

資料: 商工資源部

< 表 II -2 > 原資材價格比較 (1992年末 현재)

(單位: 달러)

原 油 (배럴)	中 國	WTI油	Brent油	사 우 디 油
	14.20	18.82	18.16	15.71
無煉炭 (톤)	中 國	國 際 價		
	41.54	41.73		

資料: < 表 II -1 >과 같음.

2. 市場 및 生産效率追求型

새로운 販賣市場을 開拓하거나 既存輸出地域의 輸入規制를 迂廻하여 現地에서 生産함으로써 輸入國의 貿易障壁을 回避하여 既存의 輸出市場을 保護하기 위하여 現地에 投資하는 것으로 輸出對象國이 構築한 輸入障壁으로 인하여 輸出이 縮小 또는 抑制되는 것을 克服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이와 같은 投資는 輸出을 代替시키는 것은 물론 海外直接投資를 통해 現地에서 더욱 좋은 製品을 供給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게 한다.

生産效率追求型 (Production Efficiency Seekers)이란, 生産要素中에서 資本은 國際적으로 移動성이 比較的 높지만 勞動力의 國際間 移動은 制限이 많은 편에 속하고 土地의 移動은 전혀 發生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企業들은 移動성이 制限되는 勞動, 土地 등 生産要素의 價格이 自國보다 相對적으로 低廉한 外國에서 現地生産을 통해서 製品의 國際競爭力을 提高하기 위한 直接投資를 摸索하게 되는데 이러한 型態의 海外直接投資를 生産要素指向型이라고 하며, 이는 現地の 生産費가 싸기 때문에 이를 利用하여 現地에서 部品 및 半製品을 生産하여 國內에서 組立하거나 國內에서 生産된 部품을 現地에서 組立하여 消費者에게 販賣하는 것과 같은 垂直的 統合을 통해 값싼 製品을 生産하거나 部品 및 半製品을 輸出하는 것으로 過去 美國이나 日本企業은 自國의 競爭力을 잃어가는 産業의 工場을 第3國으로 移轉하여 勞動集約的 製品의 生産立地를 세웠었다.

最近에는 技術集約的 내지 技能集約的 生産效率確保型 投資도 늘고 있는데 産業에 따라서는 競爭樣相이 汎世界的으로 擴大됨에 따라 生産原價面에서 좀더 有利한 國家에 生産立地를 選擇하면서 同時に 生産規模를 擴大해서 規模 및 經驗

效果를 極大化시키려는 戰略을 많은 多國籍企業들이 採擇하고 있다.

3. 知識指向型 및 海外用役型

知識指向型(Knowledge-oriented) 海外直接投資는 先進國의 高度화된 製品生産技術, 經營管理技術 등을 習得하기 위하여 直接投資를 行하는 形態로 유럽이나 日本의 企業들이 美國系企業들을 直接引受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다. 最近 韓國의 企業들이 美國을 中心으로 한 先進工業國에 海外直接投資를 하고 있는 것은 尖端技術을 習得하기 위한 것으로서 知識指向型 海外投資의 一環이라고 볼 수 있다.

海外用役指向型 投資(Service Seekers)는 서비스産業, 즉 3次 産業에서의 海外投資로 “Follow-The-Customer”動機에 의해서 발생한다. 銀行, 保險, 廣告, 運輸會社 등 서비스産業部門에 從事하는 企業들은 顧客의 海外活動이 擴大됨에 따라 海外에 進出하게 되며, 특히 多國籍企業을 顧客으로 가진 서비스會社들은 顧客企業의 世界的 組織網을 連結시켜 주기 위해 自身の 組織을 擴大하게 되는 것이다.¹⁷⁾

第 3 節 韓國의 海外投資 現況

韓國企業의 海外投資活動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이후로 1992년에는 총497건 1,218백만달러로 1987년의 97건 409백만 달러보다 무려 446%와 197%로

17) 鄭求鉉, 前掲書, p. 279.

증가하였으며, 이와같은 韓國企業의 海外投資에 관한 설명은 前節에서 제시한 理論이¹⁸⁾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 表 II -3 〉 年度別 海外投資 推移

(單位: 件, 千 달러)

區分 年度	總 投 資		청 산		純 投 資		年度末 投資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1987	91	409,708	32	89,611	59	320,097	523	939,423
1988	173	216,288	32	59,665	141	156,623	664	1,096,046
1989	269	569,590	23	177,203	246	392,387	910	1,488,433
1990	338	955,366	22	146,141	316	809,225	1226	2,297,658
1991	443	1,115,096	23	88,140	420	1,026,956	1646	3,324,614
1992	497	1,218,395	34	121,114	463	1,097,281	2109	4,421,895

資料: 財務部, 「財政金融統計」, 實投資 金額基準.

1992년말 현재 投資殘額은 2,109건에 4,422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海外投資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GNP에 대한 海外投資의 비중은 1.5%으로 日本의 10.5%, 美國의 7.7%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¹⁹⁾

1. 業種別 動向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44건, 651백만 달러로 건수기준으로는 總投資(497건 1,218백만 달러)의 69.2%, 금액으로는 53.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貿易業이 87건에 303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18) 開途國의 海外投資理論을 說明하는 理論은 크게 4가지로 접근하고 있다.

①절충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투자발전 단계설(Dunning)

②기존의 산업조직이론에 부분적 수정론(Giddy, Young)

③버론의 제품수명주기 이론의 수정이론(Wells)

④요소부존의 차이에 따른 비교우위의 이동에 초점을 맞춘 거시이론(Kojima)

19) 韓國貿易協會, 貿易年鑑, 1993, p.363.

〈 表 II -4 〉 業種別 海外投資現況

(단위: 건, 천달러)

	1968~87	1988	1989	1990	1991	1992
광업 (건수)	502,822 16	64,993 2	79,930 1	151,959 7	123,294 4	150,195 6
임업	71,004 12	450 1	34,150 1	55,501 -	250 -	1,900 1
수산업	19,052 52	13,618 4	39,197 9	27,854 17	14,404 22	26,032 30
제조업	331,551 132	81,904 68	280,166 147	488,905 192	598,767 277	650,873 344
건설업	50,115 70	6,365 9	12,914 3	4,931 7	12,662 4	466 3
운수업	4,857 30	516 6	2,014 6	1,718 8	9,253 6	9,736 5
무역업	113,588 357	42,718 69	61,257 79	219,925 78	232,939 94	303,268 87
기타	43,753 62	5,724 14	63,962 23	54,524 29	123,257 36	75,961 21
계	1,136,823 731	216,288 173	569,590 269	955,366 338	1,115,096 443	1,218,395 497

資料: 〈 表 II -3 〉과 같음.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10대 投資對象國을 보면 中國이 252건으로 인도네시아를 앞질러 1위를 차지하고 金額으로는 176백만 달러로 3위에 있어 中國에 대한 製造業投資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表 II -5 〉 우리나라 製造業의 10대 海外投資對象國 (1992년말)

건수 기준		순위	금액 기준	
건수	국가명		국가명	금액(백만\$)
252	중 국 (3)	1	미 국 (1)	566
189	인도네시아(1)	2	인도네시아(2)	399
118	미 국 (2)	3	캐 나 다 (3)	325
76	필리핀 (3)	4	중 국 (6)	176
69	말레이시아(6)	5	말레이시아(4)	139
56	태 국 (5)	6	필 리 핀 (5)	102
53	스리랑카 (7)	7	태 국 (7)	80
29	과테말라 (8)	8	스리랑카 (9)	62
23	홍콩 (*)	9	영 국 (8)	57
17	온두라스 (9)	10	프 랑 스 (*)	25

註: ()내는 1991년말 순위, *1991년말 현재 순위 10위 이상

資料: 〈 表 II -4 〉와 같음.

2. 地域別(國家別) 動向

地域別 海外投資 動向을 보면 對東南亞 投資가 358건, 519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기준으로는 總投資의 72.0% 금액기준으로는 42.6%를 차지하며, 對北美投資가 63건에 392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大規模 投資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80년대 중반이전의 輸入規制에 대한 迂廻輸出을 하기위한 美國·中南美地域으로 많이 진출하였으나 1980년 중반이후는 국내에서 輸出競爭力을 상실한 기업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東南亞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地域別 平均投資 規模를 보면 對北美 投資가 건당 622만 달러, 對유럽投資가 건당 389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對東南亞 投資는 145만 달러, 對中南美 投資는 건당 138만달러를 기록하였다. 對先進國 投資는 주로 電子, 化學, 鐵鋼 등 資本集約的인 大規模 위주로 이루어 졌으며, 對開途國 投資는 纖維, 玩具, 신발 등 勞動集約的 小規模 投資 위주로 이루어졌다.

〈 表 II -6 〉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

(단위: 건, 천달러)

	1968~87	1988	1989	1990	1991	1992
동남아 (건수)	259,997	44,985	129,636	296,498	427,923	519,267
중동	211	69	129	188	271	358
북미	203,399	41,212	31,648	40,275	58,569	75,251
	54	1	1	-	-	2
중남미	443,341	95,983	282,919	434,962	458,819	391,642
유럽	275	57	72	86	82	63
아프리카	17,772	14,209	55,427	35,733	41,546	35,708
	56	15	28	25	36	26
대양주	73,735	15,443	19,636	95,200	89,984	144,187
	76	16	17	22	36	37
	28,627	1,460	8,411	26,520	18,009	28,963
	35	3	6	2	5	3
계	111,952	2,996	41,913	26,178	20,246	23,377
	31	12	16	15	13	8
계	1,136,823	216,288	569,590	955,366	1,115,096	1,218,395
	731	173	269	338	443	497

資料: 〈 表 II -5 〉와 같음.

國家別로 보면 최근 對東南亞投資의 增加勢를 反映하여 20代 海外投資對象國 중 아시아권 國家가 10위대에 8개국, 金額基準으로는 6개국을 차지 하였다. 특히 修交後 投資與件이 호전된 中國에 대한 投資急増勢를 보여 건수 기준으로는 91년 의 5위에서 1위로 금액기준으로는 10위에서 3위로 주요 投資對象國으로 浮上하였다.²⁰⁾

3. 海外投資의 成果

商工部에 따르면 1992년중 海外投資기업의 賣出額은 약 25억 5천만 달러로 集計되고 業種別로는 전자 등 組立金屬이 1,271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1次 金屬이 789백만 달러, 纖維가 710백만 달러, 石油化學이 562백만 달러, 신발가죽이 351백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輕工業製品과 重化學製品의 賣出比率은 重化學製品이 전체의 64.8%를 차지함으로써 低賃金에 基礎한 勞動集約的 輕工業分野에 대한 海外投資가 주로 小規模에 그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製造業의 收益性を 보면 輸出入銀行이 1989년 이전에 진출한 현지법인 86개를 대상으로 1992년 10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進出後 3년 이상 경과된 사업의 경우 56만 달러의 이익을 實現한 반면, 3년 미만의 사업은 2,398만 달러의 損失을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海外投資金額 대비 國產機資材 및 원부자재의 輸出比率은 제조업의 경우 197.7%로 매우 높은 반면, 자원개발사업은 7.5%, 어업은 1.9%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投資金額對比 外貨獲得率의 比率도 제조업은 35.4%에 달하는 반면 어업은 13.8%, 자원개발사업은 3%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

20) 韓國銀行, 海外投資 現地法人現況, 1992.12.

다. 21)

〈 表 II -7 〉 海外投資의 貿易 및 外貨稼得效果 (1992년)

	제 조 업	자원개발사업	어 업	기 타	계
수출실적/投資금액	197.7	7.5	1.7	1.7	89.5
외화가득액/投資금액	35.4	3.0	3.9	3.9	18.4

資料: 韓國輸出入銀行 實態調査, 1992. 10.

21) 韓國輸出入銀行 實態調査, 1992.10.

第 III 章 中國의 投資環境分析

第 1 節 對外開放政策의 實施背景

中國에 대한 直接投資를 說明하는데 있어서 企業이 海外의 不確實한 環境에도 불구하고 輸出이나 技術移轉과 같은 外部市場을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賃加工 契約에 의존하지 않고 直接投資를 하는가 또 우리나라 製造業의 海外投資에서 中國이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요인을 中國의 環境의 특성과 결부시켜서 분석해 봄으로써 中國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현지 경쟁에서 優位를 가질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본다.

中國이 1978년부터 西方에 대해서 積極적인 開放으로 對外政策을 轉換한 것은 1949年 中華人民共和國 建國이래 推進해 왔던 毛澤東의 自力更生の 原則에 基礎한 社會主義經濟의 閉鎖的 開發戰略의 重要な 變化였다.

이는 오늘날 中國에서 엿볼 수 있는 社會主義體制가 지니는 矛盾中的의 하나로 經濟가 어느 정도 成長하게 되고 生産品과 生産過程이 多樣性を 나타내게 되면 價値와 市場原理를 無視하는 硬直된 計劃經濟制度는 經濟가 보다 高度化하고 發展을 꾀하는데 있어 오히려 더 큰 障礙가 된다는 것이다.

中國이 현재 試圖하고 있는 改革과 開放에 관한 關心은 이러한 否定的 側面을 是正하고 改定해 나가려는 努力의 現代化政策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社會主義經濟體制의 限界와 더불어 變革의 不可避性を 立證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1978年 12月 中國共產黨 第 11期 中央委員會 第 3次 全體會議(第 11期 3中全會)에서 國內經濟活性化政策과 함께 經濟開放政策을 國家的 目標로 宣言하고 이를 위하여 經濟全般에 걸친 改革을 主唱하게되며 이어서 經濟特區를 設置하고 外國人直接投資를 包含한 모든 形態의 外資導入을 권장하는 등, 그 以前과는 基本的으로 다른 經濟發展戰略을 採擇하게 되는 데에서 本格的인 對外開放이 始作되었다.

1. 對內的 背景

中國은 第 1次 5個年計劃(1953~1957年)을 實施한 結果 5年동안 中國의 國民經濟는 全般的으로 高度成長을 하였다. < 表 III -1 >과 < 表 III -2 >에서 보듯이 이 期間의 農工業總生産額의 年平均增加率は 10.9%이며 1952년에 비해 倍加되었다. 그 中에서도 工業의 年平均增加率は 18.0%로 1952년에 비해 2.3배로 飛躍的인 增加를 하였다.

< 表 III -1 > 1953~1957年 中國經濟의 成長率

區 分	1955년에 대한 1957年の 成長(%)	年平均成長率
社會總生産額	70.9	11.3
國民所得	53.0	8.9
農·工業總生産額	67.8	10.9
工業總生産額	128.6	18.0
農業總生産額	24.8	4.5

註: 위 表는 比較價格으로 計算하였음.

資料: 李德彬 著, 梁必承·尹貞粉 譯, 『中華人民共和國 經濟史(I)』, 敎保文庫, 1989, p. 250.

22) 蘇致馨, “韓國의 對中國 交流方案”, 韓國과 共產圈,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11., p. 46.

〈表 III -2〉 第 1次 5個年計劃期間中の 主要工產品의 生産量과 成長速度

區分	單 位	1957年度 實際生産量	計劃生産量이 차지하는 比率(%)	1952년에 비해 1957年 度の 實際成長率(%)
石炭	億 톤	1.31	115.9	98
發電量	億 kwh	193	121.4	164
鐵鋼	萬 톤	535	129.8	296
銑鐵	"	594	127.2	208
시멘트	"	686	114.3	140
木材	萬 m'	2,787	139.4	149
자전거	萬 臺	80.6	145.2	388.5
製紙	萬 톤	91	138.9	145.9
原油	"	146	72.6	231.8
설탕	"	86	86	91

資料:〈表III -1〉과 같음, p.251.

中國은 1958~1960年代에 들어오면서 農工業의 主要生産物의 生産量을 短期間內에 2倍로 成長시킨다는 목적하에 大躍進運動을 展開하여 農業發展綱領과 함께 英國과 美國을 뛰어넘는다는 戰略目標와 社會主義建設의 方針 등이 차례로 提示되었다.²³⁾ 大躍進은 生産面에서 高目標를 追求하고, 建設面에서는 大規模를 追求하고 經濟發展에 있어서는 “鐵鋼第一主義”로 重工業의 一面的 發展을 指向하였다. 1958年の 鐵鋼生産量은 1,070萬톤으로 1957년 生産량인 535萬톤의 2倍인

23) 1958年 마오쩌둥(毛澤東)은 黨議의 8代 2次 會議의 談話에서 英國과 美國을 뛰어 넘는 時間을 크게 短縮하도록 要求하고 7年만에 英國을 뛰어넘고 여기서 다시 8年이나 10年안에 美國을 따라 잡도록 할 것을 要求하였다.

1,070萬톤을 達成하기 위해 提案된 것이다. 이러한 高目標가 3年間 계속된 結果 經濟全體의 正常的인 秩序가 混亂되고 比率關係도 顯著하게 不均衡하게 되었다.

24) 이는 中國의 客觀的인 條件과 經濟法則을 無視하고 지나치게 높은 目標量의 設定과 盲目的인 指揮 등 主觀的 能動性에 대한 지나친 強調와 人民共產化運動에 서의 所有化와 大規模化의 一面的 追求 등 生産關係의 變革適用에 대한 지나친 強調와 工產品의 蔓延은 大衆의 積極性을 挫折시키고 財富의 浪費를 가져와 生産을 破壞하여 國民經濟의 發展에 深刻한 挫折을 招來하였다. 25) 이로 인해 農工業 生産의 大幅的인 減少와 生活水準의 急激한 低下가 초래되었다.

〈表 III -3〉 1958~1962年の 農業生産狀況

區 分	1958年	1959年	1960年	1961年	1962年
農業總生産額(億元) 前年度에 對比한 增減(%)	550 2.4	475 -13.6	415 -12.6	405 2.5	430 6.2
食糧의 總生産量 前年度에 對比한 增減(%)	4,000 2.5	3,400 -15.0	2,870 -15.6	2,950 2.8	3,200 8.47
棉花의 總生産量(萬擔) 前年度에 對比한 增減(%)	3,937.5 20.1	3,417.6 -13.2	2,125.8 -37.2	1,600.0 -24.7	1,500. -6.3

註: 農業總生産額은 固定價格으로, 指數는 比較價格으로 計算함.

資料: 李德彬 著, 梁必承·尹貞粉 譯, 『中華人民共和國 經濟史(Ⅰ)』, 敎保文庫, 1989, p. 32.

특히 工業部門에 있어서도 1960년에 384億 食糧과 棉花의 生産은 대체로 10 年내지 11年 後退하였고²⁶⁾ 이것은 輕工業生産에 影響을 미치고 生活水準의 下落

24) 朴贊億, “社會主義 經濟改革理論과 中國의 經濟改革”,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9., p.185.

25) 朴贊億, 上掲書, pp.185~187.

26) 李德彬 著, 梁必承·尹貞粉 譯, 中華人民共和國 經濟史(Ⅱ), 敎保文庫, 1989, p. 32.

에 나쁜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工業生産에 있어서도 深刻한 後退가 있었다는 것이다. 1960~1962년까지 全體輕工業 生産量의 減少는 相當히 深刻해서 1962年の 경우 1959년에 비해 35.2% 減少하였다. 農業과 輕工業의 繼續的인 生産量의 減少로 重工業과 鐵鋼工業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어 1961년부터 大幅的으로 減少하기 始作하였다. 工業部門에 있어서도 1960년에 384億元이었던 全國基本建設投資額을 1961년에는 123.4億元으로 壓軸되었고 全國의 重工業總生産額은 1960年の 66.7%에서 1962년에는 53.7%로 떨어졌다. 또한 鐵鋼生産量은 1961년 870萬톤에서 203萬톤 減少하여 1962년에는 667萬톤이 되었다.²⁷⁾

〈 表 III -4 〉 1961~1962年 重工業의 減少狀況

區 分	1961年	1962年
重工業總生産額 (億 元) 前年度에 對比한 增減 (%)	558 -46.5	455 -22.6
石炭의 總生産量 (億 噸) 前年度에 對比한 增減 (%)	2.78 -30.0	2.20 -20.9
鐵鋼의 總生産量 (萬 噸) 前年度에 對比한 增減 (%)	870 -53.3	667 -23.3
金屬切斷機의 總生産量 (萬 臺) 前年度에 對比한 增減 (%)	5.67 -63.1	2.25 -60.3

資料: 〈 表 III -3 〉와 같음. p. 35.

1960年代 前半에 들어와 大躍進期의 危機的 狀況과 困難한 政勢를 轉換시키기 위해 劉少奇, 鄧小平에 의하여 調整政策이 修行되어 企業은 量보다 品質向上을 重視하였고 農村經濟는 人民公社體制를 調整하여 配給制를 廢止하고 個人에게 保有하게 하는 自留地²⁸⁾와 農村市場을 回復하였다. 이상과 같은 諸政策措置에

27) 李德彬 著, 梁必承·尹貞粉 譯, 前掲書, p. 35.

28) 自留地: 農業의 集體化가 이루어진 후에도 各 農家は 小規模의 土地를 自體經營할수 있었다. 略 5~7%가량의 生産隊 所有의 土地가 自留地로 運營되었는데, 비록 他人에게 專賣나 賃貸를 禁해오고 있으나 實際的으로는 該當農家は 모든 所有權의 行使를 할 수 있었음.

의하여 國民經濟는 好轉되기 始作하였다. < 表 III -5 參照 >.

< 表 III -5 > 1963~1965年 農工業의 生産狀況

區 分	1963年	1964年	1965年
農工業總生産額 (億 元) 前年度에 對比한 成長(%)	480 11.6	545 13.5	590 8.3
食糧生産量 (億 斤) 前年度에 對比한 成長 (%)	3,400 6.3	3,705 10.3	3,890.5 3.7
棉花生産量 (萬 擔) 前年度에 對比한 成長 (%)	2,400 60	3,325.4 38.6	4,195.5 26.2
工業總生産額 (億 元) 前年度에 對比한 成長 (%)	922 8.5	1,103.2 19.5	1,393.9 26.4
鐵鋼生産量 (萬 噸) 前年度에 對比한 成長 (%)	762 14.2	964 26.5	1,223 26.9
綿布生産量 (億 m) 前年度에 對比한 成長 (%)	33.4 32.0	47.1 41.0	62.8 33.3

註: 農工業總生産額은 固定價格으로, 指數는 比較價格으로 計算한 것임.
資料: < 表 III -4 >과 같음.

그러나 調整政策은 大躍進政策을 否定하는 것이었지만 根本적으로 否定하지는 못하였으며 文化大革命(1966~1975年)의 開始와 함께 修正主義, 資本主義的인 것으로 批判받게 된다. 文化大革命이 國民經濟의 發展에 막대한 打擊과 破壞를 招來하게된 가장 根本적인 誤謬는 當時의 中國 國內의 主要矛盾을 人民의 物質的 欲求와 그 欲求를 充足시키지 못하고 있는 生産力의 低發展水準에서 구하지 않고 階級矛盾으로 잘못 把握한데 있으며 더욱이 階級矛盾을 黨內로 擴散시켜 權力鬭爭으로 昇華시켰으며, 劉少奇, 鄧小平은 『黨內的 資本主義의 길을 걷는 走資派』로 權力에서 밀려나고 많은 幹部, 專門家, 技術者도 打倒되어, 國家計劃委員會는

生産隊: 人民公社의 組織후 3等級의 所有 및 經營組織이 形成되었는데, 公社-生産大隊-生産隊의 位階秩序가 成立됨. 一般的으로 生産隊는 20-40家口가, 生産大隊는 7-12生産隊, 公社는 10-15生産大隊로 構成되어 있다.

基本的으로 機能이 停止되었으며 특히 1967年과 1968년에는 完全히 麻痺되었다.

對外經濟關係에 있어서도 '4人幫'²⁹⁾은 盲目的인 排外를 煽動하고 技術設備의 導入을 '답습주의', '서양노예철학', '서양노예매판'이라고 攻擊하여 技術導入을 中斷시키고 部分的인 導入도 經濟的 效果가 良好하지 못하였다.³⁰⁾ 文化大革命期間동안의 經濟建設에서의 "左傾"의 誤謬는 國民經濟에 커다란 損害를 입히고 經濟效率을 低下시켰으며 國民所得에 끼친 損失額은 5千餘 億元에 달했다.³¹⁾

〈 表 III -6 〉 文化大革命 期間中の 年度別 平均成長率

區 分	社會總生產額	農工業總生產額	農業總生產額	工業總生產額	國民所得
'3·5期間 1966~70	9.3	9.6	3.9	11.7	8.3
'4·5期間 1971~75	7.3	7.8	4.0	9.1	5.5
1976年	1.4	1.7	2.5	1.3	-2.7

資料: 〈 表 III -5 〉와 같음.

1975年 1월에 周恩來 首相이 10年間 長期經濟開發構想을 發表하였다.³²⁾ 이로써 1976~1985년에 이르는 10個年計劃期에 접어들게 되는데 첫해에 國內政治的 大混亂 및 河北의 大地震, 全國의 異狀氣溫으로 期待에 빗나가기 始作했다.

그러나 1977年 鄧小平의 復權으로 四大現代化計劃³³⁾을 發表하고 農業, 工

29) 四人幫: 지안칭(江青), 장춘차오(張春橋), 왕홍원(王洪文), 야오 윈위안(姚文元)을 指稱하며 文化大革命을 主導했고 1971年 린뱌오(林彪)의 失脚後 急進政策을 主導해 나왔음. 毛澤東死亡後 失墜, 1980年代에 裁判에 回附되어 현재 刑期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0) 李德彬 著, 梁必承·尹貞粉 譯, 前掲書, p.193.

31) 李德彬 著, 梁必承·尹貞粉 譯, 上掲書, p.194.

32) 1975年 1月 13日 第 4期 全人大에서 提議.

33) 四大現代化計劃(四化): 工業現代化, 農業現代化, 國防現代化 및 科學現代化 등 1954年 9月 第 1期 全國人民代表會議 第 1次會議에서 周恩來가 最初로 言及한 것으로 알려지며, 여기서는 1978年 第 11期 第 3次 中央黨全體會議

業, 運送 및 公共施設 등에 620億元(略 400億弗)의 資本을 投資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中國의 資源으로 볼 때 너무 過大한 것이므로 1978년에는 投資比率을 낮추었고 鐵鋼이나 機械産業에 대한 投資를 減少시키고 農業에 대한 投資만을 늘려나갔다. 農業에 대한 投資比率은 1978年 10.7%, 1979年 14%, 1980년에는 16%로 增加시켰다. 특히 1978년에는 지금까지 維持하던 人民公社制度를 撤廢하고 生産責任制(請負契約制)를 實施했다.³⁴⁾ 이 期間中 對外貿易은 134.4億弗에서 378.2億弗로 第 4次 5個年計劃期間과 같은 比率로 增加했다.

〈表 III -7〉 第 5次 5個年計劃의 生産實積

區 分	單 位	1976	1977	1978	1979	1980
G N P	10億 달러	323	373	438	514	550
人 口	百萬 名	932.6	945.2	958.0	970.0	982.5
1人當 GNP	달 러	346	395	457	529	560
穀 物	百萬 톤	285	283	305	332	321
棉 花	"	-	2.0	2.17	2.2	2.7
電 力	億 Kwh	2,031	2,234	2,566	2,820	3,006
石 炭	百萬 톤	483	550	618	645	620
石 油	千 톤	87,160	93,640	104,050	106,150	105,950
石 油 產 品	"	46,700	55,650	65,240	73,900	79,860
對 外 貿 易	10億 달러	13.44	14.8	20.64	29.33	37.82

資料: 韓國貿易協會, 『中共의 主要經濟統計』, 1986.3.

中國은 第 6次 5個年計劃(1981~1985年)에 들어와 1979年以來 大幅的인 經濟體制를 改革을 단행하여 急速한 經濟發展과 生活水準의 向上을 이룩하였다.

農業生産性은 自然災害에 의한 生産減少로 1985년에는 14%로 增加率이 낮았으나 製造部門生産增加는 1984年 14%에서 1985년에는 18%로 增加되었다. 이 期間中 對外貿易은 初期(1981年) 404億弗, 末期(1985年) 696億弗로 初期보다 72% 增

에서 鄧小平의 發表를 말한다.

34) 生産責任制: 農地耕作權을 個人 혹은 集團에 줌. 耕起面積에 따라 割當된 農産物을 政府에 팔아야 하고(義務規定) 超過生産量은 農産物市場에 販賣할 수 있는 制度.

加되었다.

1985년에는 그 동안 經濟改革措置에 따른 投資와 銀行與信擴大로 物價變動이 컸다. 이러한 經濟成長을 바탕으로 經濟開發 7次 5個年計劃期間(1986~1990年)은 對外開放政策을 더욱 加速化하고 農業生産性이 어느 정도 向上되었으므로 工業生産에 重點을 두었다.

結果적으로 1987年 GNP는 10.9%, 1988年 GNP는 11.2%(工業成長率 21%)로 成長했으며, 1989年 貿易量이 1,116億弗로 8.5% 增加(1988년에는 22.8%增加)했으며 1990년에는 1,154億弗로 3.4% 增加에 不過했다.

最近 中國에서는 對內的인 經濟改革을 國家가 市場을 調整하고 市場이 企業을 指導하는 體制로 變更하고 對外的으로는 國際收支의 均衡을 維持하여 國家現代化를 達成하기 위해 各種 인센티브를 提供하고 있으며, 輸出補助金の 廢止, 損益自己負擔制의 全面的 實施 등 새로운 貿易體制的 改革이 實施되어 1991年の 貿易은 輸出入 모두 前年對比 略 100億 달러를 上廻하는 好調를 보여 史上最高를 記錄하였다. 海關統計에 따르면 貿易總額은 前年對比 17.5% 增加했으며, 貿易黑字는 1990年 87億 달러와 거의 비슷한 水準인 81億 달러를 기록하였다. < 表 III -8 參照 >.

< 表 III -8 > 第 7次 5個年計劃期の 實積

區 分	單 位	1987年	1988年	1989年	1990年	第 8次(1991年2月)
G N P	億 元	11,351	14,015	15,916	17,689	19,580
1人當GNP	달 러	284	344	352	354	*
輸 出	億달러	394.4	475.4	525.4	620.9	719
輸 入	"	432.1	552.5	591.4	533.5	638
人 口	萬 名	108,073	109,614	112,914	114,333	115,823

資料: 1987~1990年은 『中國統計年監』(1991年板), 1991年은 『中國國家統計國公報』, 1992.2.29.

1992年 第 14次 黨大會에서 中國은 鄧小平이 『南巡講話』³⁵⁾에서 提案한 ‘改革의 深化·開放의 擴大’ 方針을 再確認하고, 政治·社會的 危險이 比較的 적은 部門부터 改革을 優先實施하되, 改革의 重點은 첫째, 市場機能의 擴大 둘째, 相互價格構造의 漸進的 改善과 合理化 셋째, 國家와 企業間關係의 合理化에 두기로 決定하였다.

第 14次 黨大會以後 中國經濟改革의 展開方向³⁶⁾을 보면 첫째, 經濟運用 메카니즘에 있어서의 市場機能의 擴大·活性化로 ① 指令性計劃範圍의 縮小와 市場 및 指導性計劃 範圍의 擴大 ② 巨視經濟調整(특히 生産, 投資)에 있어서의 利子率, 稅率機能의 強化 ③ 商品市場以外에 生産物資, 金融, 技術, 勞動, 不動産市場의 育成과 關聯法規整備 ④ 統一市場의 形成이며 둘째, 相對價格構造의 漸進的 改善과 合理化로 이는 에너지價格의 漸進的 引上和 農水産物 및 消費財에 대한 價格統制의 緩和와 二重換率制 및 二重價格制의 漸進的 廢止다. 셋째, 國家와 企業間 關係의 合理化로 ① 政府와 企業의 分離 및 企業自主權의 擴大 ② 赤字累積 國營企業에 대한 破産 및 合併의 選別的 實施 ③ 國營企業에 대한 都給契約制와 株式制의 擴散 ④ 100大企業集團의 實驗的 育成을 통한 産業政策의 有效性確保 ⑤ 農村企業에 대한 貿易自主權을 擴大하였다.

2. 對外的 背景

經濟改革 對內的 背景의 胎動은 스탈린 모델과 ‘左傾’의 誤謬에 대한 批判을

35) 南巡講話: 1992年初 鄧小平이 南部地方(廣東省: 珠海, 深圳, 廣州)과 上海(2月 2日~20日)를 視察하면서 指示한 ‘經濟建設優位’와 ‘改革加速化’路線이 政治局全體會議(3月 9日~10日)에서 黨의 指導路線으로 公式採擇됨.

36) 第 14次 黨大會上的 黨總書記報告, 姜澤民, 1992.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밖으로는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의 東歐諸國의 改革의 經驗과 理論의 吸收를 통해서 그 土臺를 마련했다.

中國은 1978年以後 東歐 등의 改革의 理論과 經驗의 攝取를 통하여 社會主義의 새로운 길을 摸索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1978年 3月 于光遠 등 中共代表團이 유고슬라비아와 루마니아를 訪問하고 이듬해인 1979年 11月에는 于光遠, 劉國光 등 5名の 著名한 經濟學者들이 헝가리經濟改革을 視察하게 된다. 그 歸國報告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登場하는데 이것은 外國의 改革의 經驗과 理論이 中國의 經濟改革에 커다란 影響을 주었음을 確認케 해준다. 즉, 「實踐은 蘇聯經濟體制의 束縛으로부터 離脫한 國家에서는 모두 社會主義制度의 優越性이 比較的 잘 發揮될 수 있지만, 아직 이런 種類의 束縛으로부터 脫却할 수 없는 國家에서는 問題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의 視察을 통하여 우리는 헝가리의 經濟體制改革이 결코 孤立된 現狀이 아님을 더욱 痛感하였다」, 「헝가리의 經濟改革은 比較的 成功하고 있는 것으로 認定해야 할 것이다」라는 報告이다. 이러한 中國內部的 過去의 經驗과 理論에 대한 批判과 外部의 經驗과 理論의 吸收를 基盤으로 1978年 11期 3中全會를 契機로 工作의 重點이 '4大現代化建設' 戰略으로 轉換하게 된다.³⁷⁾

1975年 베트남 전쟁의 종식으로 미군이 베트남으로부터 撤收하고, 그 다음 해인 1976年에 毛澤東의 사망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주장해 온 鄧小平이 執權하자 美·中 關係는 급속히 발전하였다.

中國의 連美路線에 의한 日本과의 關係擴大는 中國의 立場에서 볼 때 政治的으로 보다는 오히려 經濟的으로 더 큰 意味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中國이 당

37) 朴贊億, 前掲書, pp. 215~216.

장 必要로 하는 資本과 技術을 地理的으로 가까운 日本으로 부터 쉽게 導入할 수 있는 利點에서 뿐만 아니라 世界經濟의 中心이 美國과 日本이 主導하게 될 것이 明白한 亞細亞-太平洋으로 옮겨지고 있는 趨勢가 可視化되고 있는 狀況때문이다. 1970年代期間中 亞細亞-太平洋 地域國家인 日本, 韓國, 臺灣, 홍콩 및 싱가포르의 年平均經濟成長率은 8.2%로서 이들 國家들이 世界貿易에서 차지하는 比率 역시 꾸준히 增加하였다.

이와 같이 앞으로 亞細亞-太平洋 地域經濟가 世界經濟의 中心이 될 것이라는 展望은 實用主義路線을 追求해 온 中國의 現 執權者들에게는 中國經濟發展에 대한 하나의 큰 挑戰的 機會로 認識되었을 것은 分明하다. 中國의 對外開放政策은 그와 같은 機會를 充分히 利用하면서 21世紀의 亞細亞-太平洋時代에 對應해 나가려는 意志의 表出이라고 볼 수 있다.

第 2 節 中國의 直接投資誘致政策 및 制度

1. 外資導入政策

中國의 對外開放政策의 核心은 外資誘致에 관한 政策으로 78년에 개최된 中央黨 第 11次 三中全會의 決議가 있고난 뒤 79年 4월에 日本輸出銀行으로부터 20億 달러의 借款을 導入하기로 約定³⁸⁾한데 이어 同年 7月 中央政府는 福建省에

38) 1979년에 시작된 日本의 中國에 대한 借款은 第 1次(1979~1983年)에 3,300억엔, 第 2次(1984~1989年)에 4,700억엔에 이어 1990年 11월부터는 天安門 사태로 중단되었던 第 3次(1990~1995年) 借款 8,100억엔에 대한 供與가 시작되었다.

대하여 對外活動을 包含한 經濟運營에 自主權을 賦與하기 위해 外貨收入留保制와 財政請負制 같은 特殊政策과 彈力的인 措置를 實施하였고, 1980년에는 廣東省의 深圳, 珠海, 汕頭와 福建省의 廈門에 經濟特區의 設置를 決定하면서 外資導入政策을 實行하기 始作하였다.³⁹⁾

그러나 1982년에 廣州 投資促進會의 開催를 始發點으로 하여 投資環境의 改善作業에 着手하기전 까지만 하여도 關係法이 거의 全無하다시피 하였고 投資環境도 脆弱하여 直接投資에 대한 西方企業의 中國進出은 至極히 低調하였다. 그러자 中國은 1983년에 商標法⁴⁰⁾과 合資企業에 대한 減免稅 등 6個項의 優待措置를 發表하였고 그 施行令格인 合資企業法實施條例가 公布되어 同年 下半期부터 對中國直接投資가 急速히 增加하기 始作하였다.

1984年是 對外開放政策의 方向과 性格을 確定짓고 同政策에 대한 中國政府의 確固不動한 立場을 再確認한 重要な 時期였고 이와 關聯된 主要會談에서는 海南島 및 14個 沿岸都市의 對外開放이 發表되어 對外開放政策의 加速化내지 擴大意志를 밝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中國政府는 關係法の의 整備와 改善作業을 지속적으로 推進하고 있다.

한편 外國人의 對中國投資도 每年增加하여 對外開放政策을 始作한 1979~1982년까지는 總 55億달러를 記錄하여 같은 期間中 借款導入額 125億달러에 크게

39) 中國便覽,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pp. 300~301.

40) 商標法: 1983년에 1963年 商標法을 代替하기 위한 2個의 重要な 立法이 이루어 졌다. 첫째, 1982年 8月 23日 第 5期 全人民代表會議 常務委員會 第 24次會議에서 通過되어 1983年 3月 1日부터 施行된 中華人民共和國 商標法 (以下 '商標法'이라 한다)이며 둘째, 1983年 3月 10日에 公布·發效된 中華人民共和國 商標法實施細則(以下 '實施細則'이라 한다)이다. 1949年以後 中國商標法の 歷史를 살펴보면, 顯著的 發展이 있었다는 것이 明白하다. 中國이 1983年 商標法을 制定하고 파리協約에 加入함으로써 中國의 商標制度는 國際慣行에 近接하게 되었다.

中國의 貿易 및 投資關係法, 法務資料 第 105輯, 法務部, 1988, pp. 241~251.

미치지 못했지만 1983~1985年 期間中에는 111億달러로 外資導入額 70億달러를 크게 上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6년에는 經營收支赤字가 增加하여 外國資本導入의 必要性이 더욱 높아졌음에도 不拘하고 對外開放化以後 처음으로 外國人投資額이 減少했다.

이에 中國은 우선 外換不足으로 困難을 겪고 있는 外國人投資企業들에 대하여 外換支援을 하였으며 곧 이어 5個 經濟特區와 14個 經濟技術開發區의 行政當局들은 賃金 및 土地賃貸料 등 에서의 外國人差等化를 없앴으로써 外國人投資企業의 生産費가 낮아지도록 努力하였다.

그리고 1986年 10月 國務院에서는 官僚形式主義의 縮小와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適定線의 自律權保障, 尖端技術 및 輸出生産業企業의 管理運營費切感 등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外國人投資獎勵에 관한 國務院規程⁴¹⁾을 서둘러 制定·公布하였으며 그 후 中央 및 地方政府도 投資關聯法規를 整備하였다. 1988년에는 山東半島 및 遼東半島 開放區의 開放, 海南省의 經濟特區指定 등 開放地域을 沿海省·市全域으로 擴大하였다.⁴²⁾

1989年 6月 天安門事態發生으로 西方先進國의 經濟制裁措置가 취해지면서 中國의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가 높아져 直接投資가 萎縮되었으나 下半期에 접어들면서 다시 增加하기 始作하였다.

1991년에 접어들어 中國의 直接投資는 件數와 契約額 모두 史上最大值(12,978件, 120餘億달러)를 記錄하였다.⁴³⁾ 最近 中國國務院 對外經濟貿易部 (현

41) 外國人投資獎勵規定, 1986年 11月 公布.

42) 1988年 中國渤海灣 沿岸開發戰略의 重要據點地區로서 山東半島經濟開放區(靑島, 煙臺, 威海, 濰博, 濟南, 日照, 來州 및 44個 縣)와 遼東半島經濟開放區(大連, 瀋陽, 鞍山, 盤錦, 營口, 遼陽, 丹東, 錦州)가 國務院의 承認을 받았다. 이들 開放區로 開放都市에 준하는 優待條件을 農村地域을 包含한 全地域에서 받을 수 있다.

재 對外貿易經濟合作部)는 1992年 外國人直接投資誘致實績이 契約基準으로 48,858件, 575.1億달러, 그리고 投資實行額은 111.6億달러라고 發表하였다. 이는 前年對比 各各 277%, 380%, 160%가 増加한 數値로서 특히, 契約基準으로는 件數와 金額에서 改革·開放以來 誘致한 모든 外國人直接投資實績을 훨씬 超過한 것이다 < 表 III -9 參照>.

< 表 III -9 >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實績

(單位: 件, 億달러)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件數	6,321	1,498	2,233	5,945	5,779	7,273	12,978	48,858
金額	163.2	28.3	37.1	53.0	56.0	65.0	119.8	575.1

資料: 『中國統計年監』, 1992年版: 『日本經濟新聞』, 1993.4.3日字.

中國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가 이토록 急増하고 있는 理由는 무엇보다도 그 동안 '엄청난 潛在的 市場'으로만 評價되어 왔던 中國이 이제 '顯示化된 實質的인 市場'으로 國際舞臺에서 評價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⁴⁴⁾ 특히 1992년부터 提唱되기 始作한 所謂 '全方位開放'은 中國市場이 열리고 있다는 認識을 内外에 심어 주기에 充分한 것이었다. 開放地域의 全方位的 擴大와 함께 國內商業(流通), 金融, 不動産 등 서비스業種의 開放은 中國內需市場의 開拓을 위한 販路構築을 許容하는 重要的 意味를 지녔고, 實質的으로는 輸出義務比率의 縮小를 통한 內需市場의 開放擴大 등 劃期的인 開放政策이 속속 推進되고 있는 것이다.⁴⁵⁾

43) 中國統計年監, 1992年版: 日本經濟新聞, 1993.4.3日字.

44) 楊平變, "中國直接投資 導入政策의 變化와 外資導入現況", 北方經濟, 1992.5., pp. 75~79.

45) 安鍾石, 對中國投資의 現況과 改善方向, 地域經濟, 1993., p. 33.

2. 外國人直接投資 誘致制度

1) 外國人投資關聯法規의 整備

中國의 外國人投資關聯法規는 對外開放化政策을 開始한 1979년부터 制定되기 始作하였으며 最初의 法令은 同年 7월에 制定된 中外合資經營企業法(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oint Ventures Using Chinese and Foreign Investment)으로 全文 15條로 되어 있으며 投資承認 節次와 合營企業體의 外國人 投資比率, 利潤分配, 所得稅免除期間, 經營計劃報告, 外換送金, 合營期間 및 合營雙方紛糾時 仲裁 등 外國人投資企業을 保護하는 一般的인 原則을 明示하였다.

그 다음해인 1980年 4月에는 實質的으로 對西方世界的 外資導入을 促進하기 위하여 IMF와 IBRD에 加入하였으며 이어서 7月에는 全文 11條의 合作投資企業의 登記管理規定과 全文 16條의 勞動管理規定이 公布되었고 1982年 12月에는 外國人의 對中國投資企業의 權利와 利益을 法으로 保護받을 수 있도록 明示한 新憲法을 公布하였다.

新憲法 第 18條에는 『外國企業과 其他經營組織, 혹은 個人은 中華人民共和國 法律에 따라 國內에 投資할 수 있으며 中國企業 및 其他經營組織과 各種型式의 經濟合作을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合法的인 權利와 利益은 中華人民共和國法律의 保護를 받는다.』라고 明示하여 基本的으로 外國人이 中國投資에 대하여 法律的으로 保護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1983년에는 海外華僑企業, 外國人投資企業 및 合資經營企業에 관한 外換管理施行細則이 公布되었으며 同年 9月에는 中外合資經營企業法에 根據하여 投資可能業種, 合營企業設立節次 및 出資方式, 技術移轉, 輸出移行義務, 紛爭解

決方法 등 投資關聯事項을 具體的으로 規程한 全文 118條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 實施條例를 公布하였다.

1986年 11월에 全文 22條의 外國人投資獎勵에 관한 國務院規定(State Council Regulations Concerning Encouragement of Foreign Investment)이 公布되었는 바 同法은 현재 外國人投資關聯法規의 代表的인 規定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先進技術企業과 製品輸出企業에 대해 企業所得稅率 減免, 土地使用料 輕減, 資本의 優先的 供給 등에 관한 一連의 措置를 包含하는 등 對中國進出企業과 尖端技術產業에 대하여 特惠를 주도록 하였다.

同 規定 發表에 이어 10個의 施行細則이 만들어졌으며 外國人投資企業을 위하여 投資서비스센터, 物資供給센터 등이 設立되었고 同 規則 施行後 外國人投資企業의 輸出商品製造業과 尖端技術產業에 대한 投資가 늘어났으며 從前에 큰 比重을 차지했던 一般技術과 서비스業에 대한 投資는 顯著히 줄어들었다.

또한 1987年 4月에는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銀行融資에 관한 規定으로 中國 銀行의 外國投資企業에 대한 貸出方法이 公布되었으며 同年 8月에는 外國人投資 誘致 및 獎勵의 一環으로 外國機關 및 外國人投資企業에 勤務하는 外國人技術者, 管理要員 및 華僑, 홍콩人으로서 中國에 勤務하는 勤勞者들에게도 中國內에서 받는 俸給, 手當 등에 대하여 個人所得稅를 折半으로 引下하는 外國勤勞者 個人所得稅減免에 관한 暫定規程이 公布되었다.

더욱이 1988年 3月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金融機關을 통하여 現·先物換去來를 할 수 있도록 外換去來에 관한 規定도 公布하였고 同年에 外國人合作企業 關聯根據法制定을 위해 中外合作經營企業法⁴⁶⁾을 制定하였으며 外國人投資誘致를

46) 1988年 4月 13日 第 7次 全國人民代表大會 第 1次 會議에서 採擇.

더욱 強化하고자 經濟開放區를 沿岸 18個 市와 122個 縣으로 擴大하였다.

1990年代에 들어오면서 直接投資關聯制度의 整備는 完決되고 있다. 1990年 4月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改正하여 董事長認定, 無常沒收에 대한 危險除去, 合資期間의 撤廢 등 合資企業의 經營環境을 크게 改善하였다.

1990年 5月에는 2個의 土地關聯法規를 公布하여 外國人에 의한 土地使用權의 有償讓渡와 外國資本에 의한 大規模 不動產開發도 可能하게 되었다. 國內企業의 資金不足現狀으로 인해 獨自企業의 誘致必要性이 높아짐에 따라 同年 12月에는 『外資企業法施行細則』과 함께 『外商投資企業 및 外國企業所得稅法』을 制定하여 合資, 合作, 獨自企業의 稅率을 統一함으로써 獨自企業의 設立이 더욱 增加되는 契機를 마련하였다.⁴⁷⁾

2)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規制로는 아래와 같다.

① 投資業種에 대한 制限: 中國은 尖端技術産業, 에너지開發 및 輸送網擴大分野 등을 中心으로 39個 外國人投資優先業種을 選定하여 外國人投資를 積極誘致하고 있으나 國內産業이 過剩 또는 飽和狀態에 있는 部門, 또는 投資金額의 回收期間이 매우 짧은 部門, 그리고 先進技術導入效果가 극히 微微한 部門 등 12個 業種에 대하여는 外國人投資를 制限하고 있으며 內容은 다음 < 表 - 17 >과 같다.

② 出資比率에 대한 制限: 外國人投資의 出資比率上限은 1986年 4月 外資企業法の 制定으로 없어졌으나 出資比率下限은 25%이다.

③ 投資收益에 대한 制限: 投資收益의 海外送金에 대한 特別한 規制는 없으나 送金時에 送金額의 10%를 源泉徵收토록 되어 있다.

47) 楊平變, 前掲書, pp. 75~79.

④ 企業管理에 대한 制限: 外國人投資企業의 경우 勤勞者를 解雇할 경우에는 當局과 當事者에게 1個月以前에 通報하고 一定額이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또한 勤勞者에게 支給되는 賃金은 生産性에 따라 企業自律로 定할 수 있으나 同種國營企業의 賃金水準의 120% 以上이어야 한다.

〈 表 III -10 〉 外資導入制限 業種·品目 目錄

-
1. 都市택시業, 自動車에 의한 長距離旅客輸送, 自動車·오토바이 修理, 再生
 2. 컬러필름 DPE技術, 家電製品修理
 3. 쇼핑 아케이트管理
 4. 國內販賣用 담배, 酒類, 飲料製造
 5. 綿紡織
 6. TV, 라디오, 카세트레코더, VTR組立라인
 7. 電子計算機, 冷蔵庫, 洗濯機, 손목시계, 재봉틀, 자전거, 카메라 組立라인
 8. 自動車, 오토바이 組立라인
 9. 엘리베이터 製造
 10. 國內의 生産能力이 相對적으로 過剩내지 飽和狀態가 連續되는 製品
 11. 投資回收期間이 特別히 짧고, 收益率이 매우 높으며,
先進技術導入을包含하고 있지 않는 프로젝트
 12. 國內經濟發展需에 要適合하지 않은 統一計劃이 필요한 프로젝트
-

資料: 大韓貿易振興公社, 中國, 1990.6.

3. 外換管理制度

(1) 保有外換의 種類 및 外換의 使用과 留保

1979年 以前까지는 中央政府가 外換을 集中管理하고 있었으나, 改革·開放에 따라 地方과 企業의 自主權이 擴大되면서 地方政府 및 企業의 外換留保를 認定하게 되었고, 地方政府 및 企業이 保有하고 있는 外換은 中國銀行이 管理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中國이 가지고 있는 外換은 國家保有外換(中央政府가 保有하고 있는 外換)과 地方政府 및 企業이 保有하고 있는 外換으로 나눌 수 있다.

國家保有外換은 企業이 貿易이나 貿易外 去來로 獲得한 外換中 中央政府에 納付한 것과 中央政府가 國際金融機關, 外國政府 등으로부터 借入한 外換으로 構成된다. 현재 國家保有外換은 주로 輸入貸金の 決濟에 充當되며 中國人民銀行에 委託하여 管理하고 있다.⁴⁸⁾

企業이 貿易 및 貿易外去來로 獲得한 外貨中 地方政府 및 企業이 留保한 外換과 中國銀行, 國際投資信託公社 등이 債券發行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國際金融市場으로부터 調達한 外換 등은 中國銀行的 口座에 預置하도록 義務化되어 있다. 外換은 使用型式에 따라 使用限度를 정하여 使用되는 것과 現金을 그대로 使用하는 것으로 區分되는데, 外換使用限度(‘外匯額度’)란 外換을 使用할 수 있는 權限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各 單位(모든 形態의 組織을 칭함.)는 外換使用限度內에서 人民幣로 外換을 購入하여 使用해야 한다.

현재 外資企業 및 中央政府가 特別히 指定하는 地域과 業種에 대해서 外貨現金留保를 許容하고, 이 以外の 경우는 外換使用限度 留保만 許容하고 있다.

外換使用限度留保는 國家外換管理局 혹은 分局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外換使用限度는 이를 直接對外支給에 使用할 수 없으며, 支給金額에 該當하는 人民幣로 外換을 買入하여 使用하여야 한다.

(2) 外換調節市場管理와 機構

外換收金を 보다 圓滑하게 하기 위하여 1980年 10월부터 外換調節制度를 採擇하여 各 單位들이 過不足外換을 調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88年 3月부

48) 中國便覽, 前掲書, pp. 337~347.

터는 對外貿易部門에 있어서 契約責任制를 全面的으로 實施하게 됨으로써 各省, 自治區, 直轄市, 經濟特區, 沿海開放都市 등에 外換調節센터가 設置되었고 北京에는 全國的인 外換調節센터가 設置되었다.

國家外換管理局은 外換調節센터에서 調達된 外換을 效率적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調達外換의 使用에 대한 指導方針'을 制定했다.

外換調節換率은 外換收給狀況에 따라 變動되며 必要한 경우에는 國家外換管理局이 最高換率을 정한다. 國家外換管理局은 外換調節換率이 急激하게 變動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① 全國 各地의 外換調節換率을 公布하고, ② 外換調節센터를 통해 指導換率을 公表하여 換率이 一定限度內에서 變化하도록 하며, ③ 國家外換管理國이 中國人民銀行을 代身하여 外換調節市場에 介入, 外換賣買을 통하여 急激한 換率變動을 抑制하는 등 여러 가지 裝置를 마련하고 있다.

外換使用權限을 調達할 경우는 國家外換管理局 혹은 分局에 '外換使用權限調達計座'를 開設하여야 하며, 外換管理部門이 使用用途를 監督하고 있다.

外換現金을 調達할 경우는 外換業務取扱銀行에 '外換現金調達計座'를 開設하는 同時에 國家外換管理局 혹은 分局에 '外換現金補助計座'를 開設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外換을 直接使用하는 경우에는 外換調節센터가 使用된 外換을 件別로 記錄하고 이를 口座開設銀行에 通報하고 있다.

中國人民銀行의 國家外換管理局은 換率決定 등 外換管理를 全擔하고 있으며, 中國銀行과 中國投資銀行, 中國工商銀行, 中國人民建設銀行, 中國農業銀行, 交通銀行 및 信託投資機構와 外國銀行의 直接 등 其他金融機關은 外換管理局이 認可한 範圍內에서 制限적으로 外換業務를 取扱하고 있다.

(3) 換率決定시스템

中國人民元の 對外換率は 1986年 1월까지 主要 先進國通貨들과의 바스켓 連動(Basket Peg)制度에 가까운 形態로 決定되어 왔다. 즉, 中國의 對外貿易에서 차지하는 重要도와 相對的 價值變化 등을 勘案하여 加重된 國際貿易通貨 바스켓의 價值變動에 따라 決定되어 왔다. 이때까지 元/달러의 換率は 이 바스켓의 價值로부터 直接算定되었으며, 나머지 19個國 通貨의 換率は 현재까지 Cross Rate에 의해 決定되고 있다.

1986年 1월부터 中國의 換率制度는 一種의 管理變動換率制度(Managed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of Crawling Basket Arrangement)로 運營되고 있다. 1986年 10월부터 1989年 12월까지 元/달러 換率が 1달러당 3.7221元으로 固定되어 있었으며, 1989年 12월부터 1990年 11월까지 4.7221元으로 固定되어 있었던 점을 볼 때 非公式的으로는 人民元の 價值를 美달러에 固定시킨 連動換率制度를 維持해 온 것으로 보인다.

4. 投資管理機構와 投資節次

(1) 投資管理機構

中國의 投資管理機構는 中央水準, 地方水準, 海外水準으로 區分할 수 있는데 中央水準投資管理機構의 役割과 機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對外經濟貿易部(The Ministry of Economic Relations & Trade: MOFERT)⁴⁹⁾는 中央黨 및 國

49) 1993年 4月 組織改編에 의해 對外貿易經濟合作部로 改編되었음.

務院에서 決定된 對外經濟貿易의 方針과 政策을 執行하며 특히 外國人投資의 有用性和 尖端技術導入에 關聯된 包括적인 業務를 遂行하는 部級機構이다. 둘째, 中央銀行信託諮問公社(The Bank of China Trust & Consultancy Company)는 中國銀行의 子會社로써 投資 및 報償貿易에 參與·仲介하며 國際間的 金融·技術·學術 및 經營管理의 交流를 管掌하는 機構이다. 셋째,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The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는 外國民間貿易團體와의 交流를 主導하는 民間貿易團體로서 對外交易 및 國際合作業務를 主導·斡旋하며 國際間 貿易紛糾·海事紛糾 등에 대한 法律的 機能과 商品展示機能도 保有하고 있다. 넷째, 中國國際信託投資公社(The China International Trust & Investment Corporation: CITIC)는 國務院直屬의 副級機構이며 國際經濟·技術의 交流活動 특히 外國人投資의 모든 側面을 調整하는 包括的 機構로서 海外에도 代表事務所를 두고 있다. 다섯째, 中國國際經濟諮問公社(China International Economic Consultants Inc: CIEC)는 中國國際信託投資公社(CITIC)의 子會社로서 委託에 의해 合作投資의 對象物色, 國內外企業의 信用調査, 投資項目에 대한 市場調査, 妥當性調査 등을 實施하며 法律·金融·會計諮問의 機能도 遂行한다.

(2) 中國에 대한 一般的인 投資節次

첫번째 段階로 商品展示會나 貿易博覽會 등을 통하거나 中國國際信託投資公社 또는 對外經濟貿易部 등의 仲介機關을 통하여 中國側 合作파트너를 物色하여 파트너로 選定한다.

두번째 段階는 選定된 合作파트너와 事業規模, 合作型態, 合作比率 등을 協商한 후 ① 合作企業 設立申請書 ② 妥當性 報告書 ③ 合作同意書 및 契約書 ④

任員名簿 ⑤ 中國側 擔當部署 또는 上位機關의 意見書 등 關聯書類를 添附하여 主務官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 때 投資地域이 經濟特區인 경우에는 經濟特區行政委員會에, 開放都市인 경우에는 對外經濟貿易部の 地方事務所에 各各 提出하여야 한다.

세번째 段階는 關聯機關의 承認을 받은 후 合作企業 設立許可書を 工商關聯行政局에 提出하여 設立登記를 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營業許可證을 받은 후 營業을 開始하여야 한다.

5. 社會間接資本與件

中國政府는 社會間接施設(Infrastructure)의 整備를 위하여 以前부터 많은 努力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努力에도 不拘하고 大都市와 特區, 開發區를 除外한 大部分의 地域에서의 社會間接施設은 아직도 다른 開發途上國에 비해 대단히 劣惡한 狀態이다. 특히 交通과 通信施設의 未備는 外資系企業側에게 經營上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1) 輸送與件

輸送을 위한 條件으로는 鐵道, 道路, 海運 및 航空 등이 包含되며, 貨物運送量은 1980年代 中盤까지는 年間 75億톤 정도였으며, 1987年 90億톤을 突破하였고 1990년에는 97億톤, 1991년에는 99億톤에 달했다.⁵⁰⁾

50) 對外經濟政策研究院, 中國便覽, 1993., p. 396~403.

1) 鐵道는 輸送의 가장 큰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데 旅客輸送量은 1984年 延人員 50億名을 突破하였으며, 1990년에는 延人員 약 77億名, 1991년에는 79億名을 輸送하였다. 현재 鐵道の 總延長 거리는 약 9萬km로 推定되지만 各種 專用線 및 進入線을 除外한 實際營業距離는 總延長距離와는 相當한 差異가 있다. 1992年 末 현재 營業距離는 5.36萬km로 1980年の 49,940km에 비해 3,700km가 늘어났다. 또한 1992年 末 현재 中國이 保有하고 있는 鐵道車輛은 1980年에 비해 3,784臺가 增加한 1萬 4,467臺에 달하고 있다. 中國은 최근 鐵道の 複線化와 電鐵化를 積極的으로 推進해 나가고 있으며, 8次 5個年計劃期間동안 先進技術을 採用하여 老後된 鐵道を 改造하고 幹線鐵道는 電鐵化하며 石炭運搬幹線鐵道を 增設할 計劃이다. 鐵道貨物運送量은 1992年 15億 7,600萬톤으로 대폭 增加하였다.

〈 表 III -11 〉 中國의 鐵道運送發展推移

	單 位	1980	1985	1990	1991	1992
鐵道貨物運送量	萬 噸	111,279	130,709	150,681	152,893	157,627
鐵道旅客運送量	萬 名	92,122	112,110	95,712	95,081	99,693
鐵道貨物回轉量	億噸·Km	5,717	8,126	10,622	10,972	11,576
鐵道旅客回轉量	億名·Km	1,383	2,416	2,613	2,828	3,152
鐵道營業距離*	萬 Km	4.99	5.21	5.34	5.34	5.36
· 複線	萬 Km	0.81	1.00	1.30	1.34	-
· 電鐵	萬 Km	0.17	0.42	0.69	0.78	-
機關車保有量	臺	10,683	12,140	13,970	14,295	14,467
· 國家鐵道	臺	10,278	11,772	13,592	13,906	14,083
· 地方鐵道	臺	325	368	378	389	384

註: * 는 地方鐵道を 除外한 것임.

資料: 中國統計年鑑, 1992年; 中國統計摘要, 1993年.

2) 道路與件은 1991年 末 현재 道路의 總延長은 104.11萬km, 貨物輸送量은 73

億 7,800萬톤, 旅客輸送은 66億 5,200萬名에 달하고 있다. 최근 各種 道路施設의 擴充과 自動車의 增加로 道路에 의한 旅客輸送이 繼續 增加하고 있다.

〈 表 III -12 〉 中國의 道路運送發展推移

	單 位	1980	1985	1990	1991	1992
道路貨物運送量	萬 톤	382,048	538,062	724,040	733,907	750,000
道路旅客運送量	萬 名	222,799	476,486	648,085	682,681	720,000
道路貨物回轉量	億 톤·Km	3,220	3,375	3,358	3,428	3,500
道路旅客回轉量	億 名·Km	2,528	2,662	2,620	2,872	3,030
全國自動車保有量*	萬 臺	178.29	321.12	551.36	606.11	691.74
· 乘用車	萬 臺	35.08	79.45	162.19	185.24	—
· 트럭	萬 臺	129.90	223.20	368.48	398.62	—
個人保有車輛	萬 臺	—	28.49	81.62	96.04	118.20

註: * 民間의 自動車保有臺數.

資料: 〈 表 III -11 〉과 같음.

3) 海上運送은 1991年末 현재 航海가 可能的한 國內河川의 總延長은 10.9萬km로 最高水準이었던 1961年の 17.2萬km에 비해 顯著히 줄어들었으며 最近 10餘年間 10萬km水準은 變動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港口數는 國內河川에 2,000餘個, 沿海에 60餘個가 있으며 1990年 主要 16個 沿海港口의 輸送量은 4億 3千萬톤을 記錄하였다. 主要港口의 버어스(berth) 數는 上海 215個, 廣州 118個, 大連 75個 등 總 1,200個가 있으며 이 중 만톤級 以上の 船舶이 碇泊可能的한 버어스(berth)는 284個이다. 1991年 水上貨物輸送量은 8億 3,800萬톤이며 水上旅客輸送量은 2億 6,400萬名이었다.

〈表 III -13〉 中國의 水上運送發展推移

	單 位	1980	1985	1990	1991	1992
水運貨物運送	萬 噸	42,676	63,322	80,094	83,370	87,000
· 遠洋運輸	萬 噸	4,292	6,627	9,408	10,567	
水運旅客運送量	萬 名	26,349	30,863	27,225	26,109	26,900
水運貨物回轉量	億噸·km	5,035	7,700	11,592	12,955	13,300
· 遠洋運輸	億噸·km	3,532	5,329	8,141	8,990	
水運貨物回轉量	億名·km	129	179	165	177	180
沿海 主要港口 貨物取扱量	萬 噸	45,587	49,025	48,321	53,220	60,406
民用船舶保有量	隻	45,587	49,025	48,321	53,220	60,406

資料：中國統計年鑑，1992年；中國統計摘要，1993年。

4) 航空與件은 航空運送의 重要性이 더해 감에 따라 航空輸送效率을 높이기 위해 1987年 國務院은 中國民航總局의 獨占事項이었던 空港管理를 各 地方當局에 委任하여 航路運營에 合理化를 꾀하고 있다. 中國民航總局은 全般的인 統制事項을 管轄하며 航空業務는 中國國際航空(China International Airline Co.), 中國東部航空(China Eastern Airline Co.) 등 6個 會社가 擔當하며, 한편 美國, 유럽, 亞細亞 및 日本 등과 定期航路가 開設되어 있으며, 主要 空港은 北京, 上海, 廣州 등이다.

1992年末 현재 航空路線의 總延長은 83.66萬km, 1992年 航空貨物輸送量은 55.0萬噸, 旅客輸送量은 2,900萬名에 달하였다. 民用航空機는 보잉 747機 11臺, 보잉 737機 38臺, 보잉 707機 9臺, 보잉 767機 6臺 등 모두 467臺를 保有하고 있다. 全國的으로 94個의 空港이 있는데 이 중 보잉 737機 以上이 離·着陸할 수 있는 空港은 47個이다 〈表 III -14 參照〉.

〈表 III -14〉 中國의 航空運送發展推移

	單 位	1980	1985	1990	1991	1992
航空路線距離	萬 km	19.53	27.72	50.68	55.91	83.66
· 國際路線	萬 km	8.12	10.60	16.64	17.74	30.30
航空路線 數	個	—	268	437	452	—
· 國際路線	個	—	27	44	49	—
民航航空機保有	臺	383	404	421	438	467
航空貨物運送量	萬 噸	8.9	19.5	37.0	45.2	55.0
航空旅客運送量	萬 名	343	747	1,660	2,178	2,900
航空貨物回轉量	億 噸·km	1.4	4.2	8.2	10.1	13.5
航空旅客回轉量	億 名·km	40	117	230	301	399

資料：中國統計年鑑，1992年；中國統計摘要，1993年.

(2) 工業與件

1) 電力工業

電力不足은 中國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深刻한 問題로 현재 電力의 生産이 消費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電力工業에 대하여 重點的인 投資를 해왔기 때문에 電力의 生産量은 比較的 빠른 成長을 보여 第 6次 5個年計劃期間동안에는 8% 정도의 伸張을 보였고, 1980年에 3,600.3億kwh, 1986年 4,495.3億kwh, 1990年에는 6,150億kwh를 각각 生産하였다.⁵¹⁾ 그러나 發電量의 增加는 工業의 發展과 並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工業成長이 發電量增加率을 上廻하는 경우가 많아 發電不足現狀이 계속되고 있다.

中國은 1995년까지 電力量을 8,100億kwh, 2000年에는 1兆 1,000億kwh 水準으

51) 中國便覽, 上掲書, p.380.

로 높일計劃으로 있다. 中國은 電力不足을 解消하기 위하여 當分間은 火力에 依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建設中인 大亞灣 原子力發電所는 中國의 電力事情을 劃期的으로 變化시킬 것이며 최근 論議되고 있는 三峽댐(揚子江 中流地域)의 建設 등은 揚子江 中流地域의 洪水防止는 물론 電力生産의 增大에도 一助를 할 것으로 보인다.

2) 石炭工業

中國의 石炭生産量은 최근 몇년간 계속 1位를 記錄하고 있는데, 1989年の 경우 世界 2位 石炭生産國인 美國의 8.9億톤보다 1.6億톤이 많은 10.5億톤을 生産하였다.⁵²⁾

石炭消費量을 部門別로 보면 1989年の 경우 工業部門이 76%를 점하고 있고, 發電部門에서 全體石炭消費量の 24%를 消費하였으며 生活用 石炭消費가 1.7億톤에 달하여 石炭消費量の 16.5%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電力部門에서의 石炭需要는 계속 增加할 것으로 豫想되지만 全體的으로 需要의 急増은 없을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3) 石油工業

石油工業企業은 1990年末 현재 1,005個로 工業企業數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나 石油工業이 전체 工業生産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3.8%를 점하고 있어 石油工業企業이 大部分 大規模企業임을 알 수 있다.⁵³⁾

中國의 原油生産量은 1970年代에 急速히 增加하기 始作하여 1978년에는 1億톤을 突破하였고 以後 6年間은 停滯되었다가 1984년부터 다시 上昇하여 1986년부터 1.3億톤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52) 中國便覽, 上掲書, p. 380.

53) 中國便覽, 上掲書, p. 381.

第 8次 5個年期間이 끝나는 1995年 中國은 原油生産을 1.45億톤으로 끌어올릴 計劃으로 있는데 費用이 많이 드는 海底油田보다는 西北部地域에 대한 開發이 主軸이 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에너지의 不足은 運送問題와 함께 中國의 經濟發展에 最大의 障礙가 되고 있다. 中國은 第 6次 5個年計劃期間(1981~1985)동안 전체 基本建設投資의 20.4%에 該當하는 695億元을 에너지工業에 投資하였으며 第 7次 5個年計劃期間(1986~1990)동안에는 전체 基本建設投資의 27.5%에 달하는 2,023億元을 投資하는 등 에너지不足 問題를 解消하기 위하여 相當한 努力을 쏟아왔다.

〈 表 III -15 〉 中·長期 에너지生産目標

	單 位	1990年 實 績	1995年 目 標	2000年 目 標	年平均 增加率	
					'91~95	'91~2000
石 炭	億 톤	10.80	12.50	14.00	2.97	2.63
石 油	億 톤	1.38	1.53	1.70	2.09	2.11
天 然 가 스	億 m ³	153.0	200	-	5.50	
電 力	億 kwh	6,212	9,200	11,000	8.71	5.88

資料: 中國統計年鑑, 1992年; 中國統計摘要, 1993年.

第 3 節 外國人 直接投資現況

1. 類型別 投資現況

中國은 外國人直接投資를 外資導入의 最優先政策으로 삼고 있으며 外國人直接投資는 勞動集約型, 先進技術·經營導入型 및 輸出志向外貨獲得型の 誘致에 重點을 두고 있다.

中國이 對外開放以後 外資導入을 始作한 1979년부터 1985년까지 外國人直接投資件數는 < 表 III -23 >에서와 같이 6,334件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서 合作企業⁵⁴⁾이 3,823件으로 全體直接投資의 60.5%(件數基準)을 차지하여 主流를 이루고 合資企業⁵⁵⁾이 2,356件으로 37.2% 그리고 獨自企業⁵⁶⁾이 120件으로 1.9% 이었으나 1986년부터 1991년까지는 合作投資가 7,266件으로 26.4%로 減少한 반면 合資企業이 22,341件으로 全體의 58.7%를 차지하고, 獨自企業型態의 投資가 6,060件으로 14.7%가 急激히 增加하였다.

54) 合作企業: '中外合作經營企業法'에 따라 설립되는 中國내 法人으로 有限責任公司로 登錄하거나 法人形態를 취하지 않고 委員會 形式으로 契約에 의거 運營되는 2가지 形態가 있으며, 一般的으로 合作契約 만료후 資產所有權을 中國側에 移讓하는 條項이 계약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外資側에서 보면 設備 및 技術의 長期輸出信用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55) 合資企業: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기초로 설립된 中國내 法人으로 中國法律의 保護를 받게 된다. 合資企業은 出資額 限度內에서 有限責任을 지며 中國側에서 가장 선호하는 投資誘致 方法이다.

合資와 合作企業의 차이점은 우선 合資企業은 合資期間中 登錄資本의 減少가 不可能하며, 外資側 出資比率은 25% 이상 이어야 하나 合作企業는 期間中 投資資本의 回收가 가능하다. 그리고 出資方式에 있어 合資는 現物出資를 반드시 金額으로 換算하여야 하나 合作은 換算 할 필요가 없다.

56) 獨自企業: '外資企業法'에 따라 設立된 100% 外資의 中國내 法人으로 經營管理에 있어 完全獨立이 許容된다.

〈 表 III -16 〉 企業型態別 直接投資導入推移

(單位: 件, 百萬 달러)

	合資經營		合作經營		獨自企業		合作開發	
	件數	契約額	件數	契約額	件數	契約額	件數	契約額
1979~1982	83	127	793	2,727	33	332	13	1,422
1983	107	188	330	503	15	40	18	1,001
1984	741	1,067	1,089	1,484	26	100	-	-
1985	1,412	2,030	1,611	3,496	46	46	4	360
1986	892	1,375	582	1,358	18	20	6	80
1987	1,395	1,950	789	1,283	46	471	3	5
1988	3,909	3,134	1,621	1,624	410	481	5	89
1989	3,659	2,659	1,179	1,083	931	1,654	10	204
1990	4,091	2,704	1,317	1,254	1,860	2,444	5	194
1991	8,395	6,080	1,778	2,795	2,795	3,667	10	92
1979~1991	24,684	21,314	11,089	16,950	6,180	9,255	74	3,448

資料: 對外經濟貿易年監, 各 年度; 中國統計年監, 1991年.

1991年 資料는 日本國際貿易促進協會, 國際貿易, 1992.5.5.

獨占企業의 設立이 增加되는 契機는 1990年 12月 『外商投資企業 및 外國所得稅法』을 制定하여 從來의 獨自企業所得稅率 20~40%의 5段階 累進稅率이 統一稅法에서는 合資, 合作, 獨自企業 모두 30%의 稅率로 統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統一稅法은 작은 小規模企業의 경우 所得稅率이 上向調整되는 不利한 點도 있어 1991년에는 合資企業이 獨自企業의 增加率을 크게 上廻하였다.

또한 業種別로는 1979年에서 1985년까지 全體直接投資의 42.7%(契約金基準으로 26.4%)에 不過하던 製造業이 1990년에는 90.6%(契約金基準 81.5%)로 높아졌다. 반면 호텔, 飲食宿泊業, 事業 등 서비스業에 대한 投資費用은 계속 減少하여 1.3%(件數基準)에 이르고 있다.

〈表 III -17〉 業種別 直接投資現況

(單位: 件, 百萬 달러)

	1979~85		1986~88		1989		1990		1991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金額
農·木·漁業	445	512	408	395	183	121	223	122	220
鑛工業	2,696	3,943	7,815	6,438	5,097	4,460	6,586	5,375	9,531
(構成比, %)	(42.7	26.4	80.8	54.4	88.2	79.6	90.6	81.5	79.6)
建築業	344	259	130	226	58	67	43	181	134
交通·通信	260	248	211	141	49	52	51	36	95
不動産·公共事業	816	4,367	672	3,618	176	524	158	452	1,500
商業·飲食·宿泊·流通	791	1,317	186	193	72	67	96	106	174
海洋石油開發	35	2,783	14	174	10	204	5	194	92
其他	934	1,493	240	655	134	105	111	130	231
合 計	6,321	4922	9,676	11840	5,779	5,600	7,273	6,596	11,977

註: ()은全體直接投資에 대한 製造業投資比重임.

資料: 〈表 III -16〉과 같음.

製造業의 比重이 增加하게 된 것은 1984~1985年の 第 1次 投資붐이 일어났던 時期에 觀光·서비스業과 飲食·宿泊業 등의 業種이 急激히 增加함에 따라 1985年 外國人投資 獎勵業種, 品目, 技術目錄(39種)과 制限하는 業種, 品目目錄(12種)을 指定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高度의 技術集約産業, 原資材生産 등 基礎産業 및 資源調査·開發事業에 대한 投資를 獎勵하고, 觀光과 飲食, 宿泊業 등 一部 서비스業種과 (耐久)消費財 完製品, 技術水準이 낮고 投資期間이 짧으면서 利益率이 높은 部門에 대한 投資 및 先進技術導入效果가 극히 미미한 部門에 대한 投資는 制限한다는 것이었다.

1986年 '外國人投資獎勵規定'에서도 先進技術企業과 輸出企業만을 優待하고 있어 內需爲主의 서비스業種에 대한 投資는 制限할 것임을 間接적으로 暗示하였다. 또한 1989年 5월에 '外國企業法實施細則'에서는 國內産業, 貿易業, 保險業과 通信業分野와 關聯된 獨自企業設立을 禁止하고 있으며 公共事業과 交通·運輸業,

不動産, 信託投資, 리스産業의 投資를 制限하고 있다. 57)

2. 國家別 投資現況

1991年 投資契約基準으로 본 國家別投資現況은 홍콩과 마카오가 1979~1991년까지 325.7億 달러로 全體契約額의 62.2%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 美國이 51.4億 달러로 9.8%, 日本이 39.1億 달러로 7.5%, 臺灣이 34.3億 달러로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國家의 投資가 全體의 86.1%를 차지하고 있다.

〈 表 III -18 〉 直接投資의 國別家推移 (契約基準)

(單位: 百萬 달러)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79~92
홍콩·마카오 (건 수)	1,974 (1,785)	3,583 (4,771)	3,244 (4,244)	3,943 (5,001)	7,507 (8,879)	41,531 (31,891)	74,101 (64,435)
미 국	342 (104)	370 (269)	641 (276)	358 (357)	548 (694)	3,121 (3,265)	8,131 (5,265)
일 본	301 (113)	276 (237)	439 (294)	457 (341)	812 (599)	2,173 (1,805)	6,083 (3,696)
독 일	133 (11)	47 (22)	149 (19)	46 (13)	558 (24)	130 (130)	1,220 (241)
싱 가 폴	70 (53)	137 (105)	111 (78)	103 (72)	155 (169)	997 (742)	1,897 (727)
영 국	25 (12)	42 (21)	32 (19)	119 (23)	132 (36)	287 (126)	1,017 (258)
캐 나 다	26 (6)	40 (31)	42 (25)	15 (25)	31 (68)	316 (394)	636 (581)
호 주	45 (10)	17 (20)	84 (27)	17 (29)	44 (74)	276 (358)	616 (539)
臺 灣	- N. A.	520 (432)	430 (539)	890 (1,103)	1,389 (1,735)	5,543 (6,430)	8,973 (10,245)

註: ()안의 숫자는 件數임.
資料: 中國經濟年鑑, 1992.

홍콩企業은 沿海開放地域 특히 廣東省을 中心으로 華南經濟圈에 주로 分布되어 輕工業, 纖維, 電子部品組立 등 勞動集約型業種이며, 美國은 中國內需市場을

57) 中國年覽, 前掲書, pp. 309~310.

目標로 大都市地域과 內陸地域에 投資가 있으며, 業種面에서는 石油探查의 比重이 높고 日本은 沿海開放地域을 中心으로 製造業에 대한 投資를 점차 增加시키고 있는데 이는 1980年末 이후 韓國, 싱가포르, 臺灣 등의 地域이 黃金引上과 通貨의 評價切上 등으로 投資與件이 急激히 惡化되어서 勞動集約的인 業種을 中心으로 投資對象地域을 中國으로 旋回하기 때문이다. 臺灣은 1988年 ‘臺灣 및 華僑資本에 대한 優待措置’ 發表以後 廣東省과 福建省을 中心으로 急激히 增加하였고 1990년부터 臺灣政府가 中國에 대한 間接投資를 許容하였기 때문에 더욱 增加하였다. 58)

3. 地域別 投資現況

外國人直接投資의 中國內 地域別 投資現況은 內陸地域과 沿岸地域으로 크게 區分할 수 있으며 沿岸地域은 다시 5個의 經濟特區를 中心으로 하는 廣東省周邊地域과 北京, 天津, 上海의 3大 直轄市를 中心으로 한 東北海岸地域으로 區分된다. 그리고 1991년까지 各 地域別 投資現況은 < 表 III -19 >과 같이 廣東省이 18,851件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福建省 4,967件, 海南省 1,538件으로 外國人投資가 위의 3個 地域에 集中되어 있다.

58) 中國便覽, 上掲書, pp. 310~312.

〈 表 III -19〉 地域別 直接投資現況

(單位: 件數, 百萬 달러)

	1979~87		1988		1989		1990		1991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華南經濟圈	7,423	11676	4,082	3,088	3,762	3,633	4,451	4,106	6,433	7,145
廣東省	6,111	10438	2,706	2,242	2,438	2,438	3,042	2,690	4,554	4,905
福建省	1,020	853	813	463	872	903	1,043	1,162	1,219	1,449
海南省	-	-	441	270	375	267	252	129	470	698
廣西自治區	292	385	122	113	77	25	114	125	190	93
上海經濟圈	679	2,363	618	748	660	637	888	794	2,092	1,554
浙江省	152	149	152	113	184	84	294	133	585	317
江蘇省	204	253	247	302	277	193	393	286	1,142	787
上海市	323	1,691	219	333	199	360	201	375	365	450
渤海灣經濟圈	765	2,680	809	892	866	705	1,217	1,063	2,743	1,870
遼寧省	225	434	272	192	271	301	371	494	575	540
山東省	137	243	203	260	240	178	366	233	801	655
北京市	256	1,624	148	143	185	79	241	118	724	285
天津市	50	284	94	110	97	84	129	132	354	197
河北省	97	95	92	187	73	63	110	86	289	193
小 計	8,867 (89.2)	16719 89.7	5,509 93.6	4,728 93.4	5,288 92.4	4,975 95.0	6,556 90.7	5,936 93.6)	11286 -	10569 -
地域 全體	9,943	23707	5,886	5,064	5,720	5,238	7,273	6,368	N. A.	N. A.

註: 1) 1987년까지는 廣東省에 包含한다.

2) 全體 直接投資導入中에서 中央所屬企業의 直接投資導入을 除外한 것임.

資料: 1979~1987年은 日本國際貿易促進會, 國際貿易, 1990年 2月 6日字에서

1988~1990年은 對外經濟貿易年監, 1989~1991/92에서 拔萃한 것이다.

第 IV 章 韓國의 對中國直接投資의

問題點과 擴大方案

第 1 節 韓國企業의 對中國直接投資現況과 成果

人口 11億의 龍대한 市場潛在力을 갖고 있는 中國은 先進國의 通商壓力이 거세지는 韓國에 대해 投資地域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며 韓國企業의 對中國直接投資는 1985年 한 中小企業이 廣東省地域에 小規模投資를 시작으로 1988年 兩國間의 關係가 反公式的인 關係⁵⁹⁾로 進展되고 兩國間 人的·物的 交流가 急増하게 되면서 여러 企業들이 中國에 대한 投資에 關心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1991년부터는 本格化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에는 年初 鄧小平의 ‘南巡講話’以後 中國全域을 휩쓸 改革·開放의 새로운 물결로 ‘市場化改革’과 ‘全地方開放’으로 韓·中兩國間의 雙務的 關係 또한 ‘差別關稅防止協定’, ‘投資保障協定’이 發表된데 이어, 同年 8月에는 國交가 正常化됨으로써 對中投資가 보다 活性化되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1990년까지 總 37件, 6,861萬 달러에 불과하던 우리 企業들의 對中直接投資는 1991年 1年동안 109件, 8,019萬 달러로 增加하였고, 1992년에는 269件, 2億 1,361萬 달러로 急増하여 單一基準으로는 中國이 韓國의 最大投資對象國

59) 中國은 1988年 4月부터 山東 및 遼寧省을 韓國企業의 投資誘致中心地域으로 指定한 바 있다.

으로 浮上하기에 이르렀다 < 表 IV - 1 參照 >.

< 表 IV- 1 > 우리나라 企業의 對中直接投資의 年度別推移
(單位: 件, 百萬 달러)

	~1989	1990	1991	1992	累 計
件 數	11	37	109	269	426
金 額	13.2	55.3	80.2	213.6	326.4
平 均 規 模	1.2	1.5	0.7	0.8	0.9

資料: KIEP附設 地域情報센터, 地域經濟, 1993.6.

1. 業種別 推移

우리 나라 企業들의 對中直接投資는 製造業部門에 集中되어 있어 1992年末까지 全體 對中直接投資件數 426件中 94.6%인 403件이 製造業部門에서의 直接投資이며, 許可金額으로는 製造業部門이 全體의 91.7%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나라 企業들의 對中直接投資는 製造業部門에 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表 IV - 2 參照 >.

이는 그 동안 中國이 非製造業部門, 특히 서비스部門에 대한 外國人投資를 制限해 온데도 그 原因이 있지만, 서비스部門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規制가 緩和된 1992年에도 여전히 製造業部門에 集中되는 結果를 나타냄으로써 보다 根本的인 原因은 現地の 低廉한 人件費 등 生産要素를 利用하여 第3國 혹은 國內로 輸出하고자 하는 우리 나라 企業들의 單純對中投資動機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IV - 2〉 우리나라 企業의 業種別 對中國直接投資推移
(單位: 件, 百萬 달러)

業 種		~1989	1990	1991	1992	合 計
非製造業	鑛業		2(0.5)	1 (0.6)	1 (0.2)	4 (1.3)
	農畜産物			1 (1.9)		1 (1.9)
	貿易業		1 (0.1)		1 (0.2)	2 (0.3)
	水産業			1 (0.2)	8 (2.4)	9 (2.6)
	運輸保管業		1 (0.5)			1 (0.5)
	飲食宿泊業		1 (0.4)	1 (0.1)	3 (22.4)	5 (22.9)
	林業				1 (0.6)	1 (0.6)
小 計			5 (1.6)	4 (2.8)	14 (25.8)	23 (30.1)
製 造 業	飲料水類	1 (3.0)	5 (1.9)	6 (3.2)	16 (5.8)	28 (13.9)
	纖維,衣類	2 (1.0)	6 (3.4)	27 (18.8)	70 (46.5)	105 (69.7)
	신발,皮革	1 (1.7)	3 (6.3)	14 (19.5)	24 (15.9)	42 (43.4)
	木材,家具		3 (0.7)	3 (0.9)	13 (3.4)	19 (5.0)
	종이,印刷			2 (0.6)	4 (2.2)	6 (2.8)
	石油,化學	1 (1.3)	3 (7.2)		7 (5.2)	11 (13.7)
	非金屬鑛物	2 (1.0)	1 (1.1)	2 (0.5)	8 (12.2)	13 (14.8)
	1次金屬			1 (1.5)	6 (5.0)	7 (6.5)
	組立金屬	1 (1.8)	4 (7.6)	16 (15.2)	30 (37.5)	51 (62.1)
	機械,裝備		1 (5.0)	4 (4.8)	10 (7.0)	15 (16.8)
	其他製造業	3 (3.6)	6 (20.6)	30 (12.5)	67 (46.9)	106 (83.6)
小 計		11 (13.3)	32 (53.7)	105 (77.4)	255(187.8)	403(332.3)
合 計		11 (13.3)	37 (55.3)	109 (80.2)	269(213.6)	426(362.4)

註: ()안은 金額.

資料: KIEP附設 地域情報센터, 〈表 IV - 1〉과 같음.

이같은 特徵을 살펴보면 製造業中에서도 우리나라 企業들의 對中投資는 其他 製造業이 106件으로 가장 많고 纖維, 衣類가 105件, 그리고 신발, 皮革이 42件으로 中心을 이루고 있어 勞動集約的 輕工業에 集中되어 있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組立金屬이 51件으로 製造業中에서는 3位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 勞動集約的인 生産라인의 特徵을 가지고 있는 品目이 大部分이다.

既存 對中直接投資의 特徵으로 여겨져 오던 勞動集約的 輕工業에의 投資集中

現狀이 內需市場의 擴大開放까지도 包含하는 全方位的 開放이 推進되기 始作한 1992年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事實은 餘他競爭國들의 對中投資패턴 變化와는 相當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2. 地域別 推移

우리 나라 企業들의 對中投資는 渤海灣地域이 全體投資件數의 5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東北 3省地域으로 全體의 38.0%인 162件을 차지하여, 이 두 地域을 합하면 全體投資件數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 表 - 29 >에서와 같이 對中國直接投資의 渤海灣 및 東北地域集中現狀은 中國에 대한 直接投資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온 것이다. 이같은 現狀은, 비록 우리 나라의 경우 1991年부터 內陸地域에 대한 投資가 部分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餘他競爭國들의 對中直接投資가 地域集中에서 벗어나 全方位的으로 擴散되고 있는 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루는 것이다.

< 表 IV - 3 > 對中國直接投資의 地域別推移

地 域	省, 市	~1989	1990	1991	1992	計
渤海灣	北京市	2	2	9	8	21
	天津市		3	8	25	36
	山東省	3	7	33	101	144
	河北省	1	1	3	7	12
小 計		6	13	53	141	213
東北 3省	遼寧省	3	13	17	67	100
	吉林省		2	13	16	31
	黑龍江省		6	13	12	31
小 計		3	21	43	95	162

華中地域	上海市 江蘇省 浙江省		1	4 2	6 6 3	6 11 5
小 計			1	6	15	22
華南地方	廣東省 福建省 海南省	1 1	2	4 2	11 4	17 5 2
小 計		2	2	6	15	25
內 陸 地 域*				1	3	4
總 計		11	37	109	269	426

註: * 內陸地域은 江西省(1992), 陝西省(1992), 廣西自治區(1992), 湖南省(1991) 各 1件.

資料: 地域情報센터, 地域研究, 1993.6., p.34: China Economic News, 1993.2.15일자.

3. 所有持分別 推移

一般的으로 우리나라 企業들의 國際化過程에서 나타나는 한가지 特徵은 우리나라 企業들은 海外直接投資에 있어 統制力の 支配를 매우 選好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리나라 企業들의 國際化過程上의 特徵이 中國에서도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아래 表에서와 같이 既存 對中國直接投資企業들을 所有持分別로 살펴 보았을 때, 全體企業의 45.5%에 달하는 194個 企業이 單獨持分の 形態를 취하고 22.3%에 該當하는 95個 企業이 多數持分을 나타내어 全體 對中國投資企業의 67.8%가 支配的인 持分率을 가지고 있다.

〈 表 IV - 4 〉 所有持分別 對中直接投資推移

(單位: 件, %)

持分比率	1989	1990	1991	1992	計
少數持分	1 (9.0)	5 (13.5)	15 (13.8)	44 (16.4)	65 (15.3)
共同持分	4 (36.4)	11 (29.7)	17 (15.6)	40 (14.9)	72 (16.9)
多數持分	3 (27.3)	10 (27.1)	26 (23.8)	56 (20.8)	95 (22.3)
單獨持分	3 (27.3)	11 (29.7)	51 (46.8)	129 (47.9)	194 (45.5)
計	11 (100.0)	37 (100.0)	109 (100.0)	269 (100.0)	426(100.0)

註: ()안은 構成比.

資料: KIET附設 地域情報센터, 〈 表 IV - 3 〉와 같음.

그러나 對中國直接投資企業의 所有持分別을 年度別로 살펴 보면 〈 表 - 30 〉에서 같이 共同持分과 多數持分은 每年 減少하는 趨勢를 보이는 데 반하여 單獨持分과 少數持分이 오히려 每年 약간씩 增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過去 對中國投資企業의 持分特性을 우리나라 企業들의 一般的인 傾向과 마찬가지로 統制力の 確保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相異한 結果이다.

우리의 對中國投資企業들이 所有持分の 側面에서 兩極化現狀을 보이고 있다는 事實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觀點에서 그 評價를 달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一般的으로 所有持分과 直接投資企業의 成果에 관한 研究結果에 따르면 이같은 兩極化現狀은 오히려 成果에 良好한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投資成果에 있어서 投資側이나 또는 投資誘致側에서 意思決定上的 온전한 權限을 行事할 경우 肯定的인 結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같은 研究結果를 우리의 對中國投資企業에 그대로 適用할 경우, 所有持分の 兩極化傾向은 바람직스러운 方向인 것으로 評價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對中國投資企業들의 重要的 動機中の 하나가 潛在的 市場에 대한 情報 및 經驗의 蓄積에 있다고 할 때, 이같은 所有持分の 兩極化現狀은 그

리 바람직스럽지 못한 方向일 수도 있다. 즉, 中國現地市場에 대한 보다 많은 情報와 經驗, 그리고 能力을 갖춘 合作線을 통하여 소위 學習效果를 極大化하는 것이 向後 投資의 效率的 存在를 위해서는 短期的 成果를 提高시키는 데 急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所望스러울 수 있다는 觀點이다. 또한 우리나라 企業의 對中國 直接投資를 投資規模別로 살펴 보면 < 表 IV - 5 >과 같다.

< 表 IV - 5 >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投資規模로 살펴본 우리나라 對中國直接投資의 特徵은 100萬 달러 미만의 小規模投資에 集中되어 있다는 것이다. 1992年末현재 全體投資件數의 77.9%인 332件이 100萬 달러 미만이며, 通常 小規模投資로 分類할 수 있는 200萬 달러 미만의 投資가 차지하는 比重은 全體의 92%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傾向은 中國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가 大規模投資爲 主로 旋回한 1992年에도 계속되고 있다.

< 表 IV - 5 > 投資規模別推移

規 模	1989	1990	1991	1992	計
100萬 달러 미만	6	26	86	214	332
100萬-200萬 미만	3	4	16	37	60
200萬-500萬 미만	2	3	6	10	21
500萬-1000萬 미만		3	1	7	11
1,000萬 달러 이상		1		1	2
計	11	37	109	269	426
平均投資金額(千 달러)	1,206.6	1,495.6	735.7	794.1	850.7

資料: < 表 IV - 4 >와 같음.

< 表 IV - 5 >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件當 平均投資金額으로 살펴보았을 때 도 對中國投資의 小規模的인 特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1989년까지는 平均 120萬 달러, 그리고 1990년에는 150萬 달러에 달하던 對中直接投資件當 平均投資

金額이 對中直接投資가 本格化되기 시작한 1991년에는 73萬 달러, 그리고 1992년에는 79萬 달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第 2 節 對中國投資 事例

1. M 社의 沿革 및 對中國投資動機

(1) M社의 沿革 및 現況⁶⁰⁾

M社는 全州市 德津區 全州 第 1工團에 위치한 文具類專門 製造業體로서 1949년에 설립되어 지난 43年間 同業種에만 전념해 온 우리나라 文具類業體의 가운데 하나이다. M社는 多品種小量中心으로 高級化를 추진하면서 특히 技術開發과 品質管理에 힘을 기울인 결과 1987년 日本工業規格인 JIS마크를 획득하였으며, 초기에 연필에서 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볼펜, 파스, 마커류 등 필기구 일체를 생산하는 企業이다.

同社は 1990년 10월에 北京金星製筆廠과 合資契約을 체결하고 1991년에 법인 설립 동기 수속을 마치고 1992년 4월부터 조업에 들어갔다. 北京市 고양구에 위치한 合資會社의 명칭은 「北京文化製筆」로, 韓國側이 97만 달러, 北京金星製筆廠側이 92만 달러, 그리고 香港 베스트보너스社가 5만 달러씩 총 189만 달러를 각각 投資하였다. 會社規模는 부지면적 3,300평에 공장면적 900평이고, 종업원은

60) 韓國經濟新聞, 1993.1.18일자 參照.

관리직15명을 포함하여 총 80명이다. 본사에서는 현재 管理職(總經理) 1명과 생산기술직 1명이 현지에 파견되어 있다.

지난해 50만 달러의 製品을 생산해 內需 50%, 輸出 50%로 目標를 설정했으나 現地技術人力의 확보가 어려운데다 技術者들의 機能도 낮아 工場稼働率は 고작 20~30%에 머무르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2) M社の 進出 動機 및 類型

M社の 中國進出은 本社社長이 주도적으로 찾아 들어간 경우이다. 同社長은 볼펜 등 筆記具는 製品의 특성상 多品種小量生産體制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라 금형제작 등 설비투자가 많아야 한다고 했으며, 또한 최근 들어 國內에서 競爭業體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國內市場規模가 어느 정도 限界를 보이고 있어 投資效率의 極大化를 꾀하기 위해 海外投資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1989년부터 국내 문구협회를 통해서 中國을 방문하기 시작한 同社長은 北京에서 연필 공장을 방문하고 처음에는 同社와의 合作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그 후 原料調達과 관련 市場의 未發達 등을 고려하여 同工場의 관계 회사인 볼펜공장과 볼펜생산에 合作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 동안의 同社長은 中國과의 交流를 통해서 韓國文具類를 中國內 一般展示會에 전시할 기회를 가졌고, 中國側 文具都賣注文會는 韓國製品들을 직접 發走하여 자체적으로 百貨店에 納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中國市場에 대한 관심이 컸고 投資資金을 最適化해야 하는 制約도 있었기 때문에 同種業種인 北京市 第 1輕工業國 소속의 同社와 合資形態로 投資하

는 戰略을 推進하게되었다. 北京에서 合資를 할 경우는 同工場이 유일한 불펜 공장이기 때문에 다른 代案이 없었다. 中國側의 관련 시설과 공장 등의 資產 價値를 고려하여 50:50으로 결정하였으며, 市場條件도 輸出과 內需를 50:50으로 合意하였다. 그리고 同社의 中國投資進出의 戰略目標은 다른 投資業體들과는 매우 相異하다.

일반적으로 韓國企業들은 效率追求型의 生産費 節減을 위해 中國에 投資하였으나, 同社는 일종의 規模의 經濟를 확보하고 이를 위해 國內과 現地生産 및 市場을 연결하는데 目標을 두었다. 왜냐하면 業種의 特殊性과 이를 만족시켜 줄만한 國內 內需市場의 規模가 안된다는 것이다. 즉, 同社의 商品이 다양하고, 業種의 성격상 기계 및 금형에 대한 投資 부담이 크다는 점이며,⁶¹⁾ 製品化의 成功率이 不確實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中國市場自體의 市場潛在力이 크고, 投資의 分散效果가 있으며, 投資效率을 높일 수 있다는 利點을 가지고 있는 同社의 中國進出은 市場確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同社長의 생각은 “國際的 多國籍企業이 하듯이 中國과 韓國의 工場에서 製品을 동시에 開發하고 또 相互 製品을 交換하여 출시함으로써 規模의 經濟를 이루고 제품의 상품화 成功率을 향상시키는 戰略”을 構想하고 있다.

2. M 社의 對中國投資의 問題點과 對應方案

(1) M 社의 對中國投資의 問題點⁶²⁾

61) 4~5개의 製品을 새로 出荷하려면 통상 總 金形投資費用이 2~3억원 정도 소요되며, 製品의 價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損益分岐點이 대체로 300~500만개에 달한다.

62) 白權鎬, 投資事例로 본 對中國投資戰略,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12.

1992년 4월부터 試驗生産에 들어가 8월부터 본격적 생산을 시작한 同 社는 中國의 流通體制 改革에 따른 流通環境 變化라는 큰 벽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中國의 文具類 관련 流通構造는 製造業者 - 都賣商(第 1都賣商, 第 2都賣商, 第 3都賣商) - 一般小賣店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製造業者는 통상 小賣店과는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세가지 종류의 都賣商들과만 直接去來를 해 왔다. 第 1都賣商은 中國 國營商業部門의 文化用品공사, 第 2都賣商은 大都市의 백화점, 第 3都賣商은 農村地域의 도매유통체제이며, 第 1都賣商이 가장 저렴한 價格으로 納品하고 그 다음이 第 2, 第 3都賣商의 순이다. 기존 體制下에서는 國營流通部門에 대한 納品과 決裁가 개별로 이루어졌다. 즉 인도된 物品의 판매여부와 관계 없이 결재는 流通部門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문제는 유통부문 산하의 이들 都賣商인 企業들이 經營責任制下的 獨立採算制로 운영되면서 物品納品代金을 해당 都賣商이 직접 지불하게 됨에 따라 經營利益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經營成果가 부실한 경우의 責任問題에 따른 危險이 크기 때문에 市場性이 不確實한 제품은 인수를 하지 않으려 하고, 市場性이 있다고 判斷하여 引受한 製品도 판매가 不振할 경우에는 決裁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 물품이 팔리지 않은 경우 支拂能力이 부족하여 決裁가 遲延되면 責任問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품인수를 아예 외면하는 消極的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유통체제의 改革이 적극 추진되면서도 大都市 都賣商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자 營業에서는 物品을 납품받는 쪽에도 리베이트를 주고 收金할 때도 커미션을 주는 慣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製造業者의 입장에서는 營業費

用이 증대하고 不實債權이 증가하는 問題에 직면하여 賣出이 압박을 받게 되었다. 특히 營業社員들이 營業을 위해 支拂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手數料에 의한 費用負擔을 效果的으로 統制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그 밖에 현재 同社가 직면하는 問題로는 첫째가 파트너에 대한 能力評價의 判斷錯誤, 둘째가 中國側을 너무 믿었다는 점, 세째가 現地 經營管理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즉 現地經營 및 統制에 실패 했다는 점, 네째가 運營資金에 대해 충분히 고려치 않고 運營資金없이 시작했다는 점, 다섯째가 현지 原資材 調達計劃을 확실한 자신없이 너무 무리하게 猪突的으로 추진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中國側의 技術力을 믿었는데 期待와 現實의 차이가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M 社の 對中國投資의 對應戰略⁶³⁾

이런 問題點을 극복하기 위해 同社는 現地勤勞者를 대상으로 인센티브制度를 도입하는 한편 中國勤勞者를 國內로 불러들여 機能訓練을 시킬 계획이며, 原資材를 國內에서 들여 가는 등 원활한 資材收給을 기하는 한편 유통구조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生產品 全量을 輸出하기로 바꾸었다.

輸出에 있어 全州工場에서는 美洲, 유럽, 日本을, 北京工場에서는 동남아,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役割分擔을 통해 500만 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3. M 社の 投資事例의 示唆點

63) 韓國經濟新聞, 前掲書.

環境의 불확실성 특히 流通體制의 改革에 따른 去來 相慣行의 變化와 이에 따른 都賣機能의 약화가 內需市場 販賣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全量 內需 市場戰略쪽으로 당초 戰略을 轉換하였다. 流通市場에서 경로기구들이 消極的이고 보다 많은 費用을 요구하는 경우 製造業은 內部化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中小企業으로 進出初期인 企業이 海外에서 유통경로를 內部化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국 內需市場 진출은 외부경로를 택해야 하는 수 밖에 없기에 보다 확실한 市場을 확보하여 初期에 사업기반을 構築하는 것이 重要하다.

다음은 企業經營을 위한 資源의 投入에 관한 問題로 설사 市場與件이 매우 不確實하고 戰略이 다소 무모했더라도 기업이 效率的으로 運營되었고 目標達成을 위해 戰力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 당초 內需와 輸出 50:50 戰略에서는 우선 輸出을 重視하여 韓國側이 經營 노우하우와 技術 그리고 市場面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비록 雙方의 投資支分이 같더라도 經營權을 쥐게 되었다. 그러나 戰略이 全面的으로 바뀌면서 內需市場을 責任지기로 하였던 中國側이 獨自的으로 經營權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현재 同合資會社는 初期의 難關을 克服해야 하는 重要的 時點에 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海外에 進出하는 경우 특히 開途國에서 內需市場을 目標로 하는 경우에 初期段階에서 쉽게 범하는 過誤 가운데 하나가 製品化이다. 先進國으로 投資하는 경우에는 關稅障壁이나 保護主義의 回避가 가장 큰 動機이며 後發開途國으로 進出하는 경우에는 現地生産製品은 반드시 技術에 바탕을 둔 差別化製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中國經濟의 巨視指標와 外觀으로 보이는 생활수준만 보고 低價의 商品을 생산할 경우 큰 어려움을 갖게 된다. 中國의 環境이 不確實하나

基本的으로 市場展望이 좋기 때문에 유통부문의 改革이 安定化되고 競爭力만 살아나면 中長期的으로는 文具類의 中國市場은 中小規模의 外資企業에게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中國側 파트너와는 초기의 어려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信賴있는 의사소통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目標나 經營權을 둘러싼 갈등이 크지 않는다는 점도 앞으로의 協力擴大에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第 3 節 對中國直接投資의 問題點과 擴大方案

1. 對中國直接投資의 問題點

中國은 單一國家基準으로는 韓國의 最大投資國으로 浮上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投資가 이루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따라서 韓國企業이 對中國直接投資時 알아야 할 中國經濟의 當面課題와 社會主義市場經濟의 特徵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르는 諸般 問題點을 살펴보고자 한다.

(1) 中國經濟의 現況

中國의 經濟現況은 1989年 緊縮調整政策實施以後 沈滯되었던 中國 國內景氣는 1991年 下半期以後 金融緩和와 輸出需要增加에 힘입어 産業生産이 回復趨勢를 보임에 따라 12.8%의 成長을 實現하였다. 이러한 高度成長에도 불구하고 物價는

5.4%上昇에 그쳐 安定勢를 維持하고 있으나 35個 大·中都市의 勤勞者生計費는 10.8%上昇하여 食糧價格 140%引上과 交通·運輸料金の 自由化, 國內景氣回復에 따른 需要増加로 物價上昇壓力이 作用하여 安定基調가 흔들리고 있으며, 輸出入에 있어서도 中國政府의 輸出 드라이브政策과 外國人投資의 貿易寄與度, 國內生産増加에 따른 輸入 등으로 輸出入總額은 1,656億 달러(22.3%増加)에 달하고 있으며 原資材와 施設材輸入이 増加하여 貿易黑字는 前年에 比하여 37億 달러가 減少한 44億 달러에 달하였다. 따라서 中國政府는 單一換率制度로서의 履行과 貿易黑字幅의 鈍化現狀을 勘案하여 最近 人民幣의 市場換率을 政策的으로 切下해 가고 있다.⁶⁴⁾

外資導入에 있어서는 3次産業의 開放과 하이테크産業에 대한 國內市場開放 등으로 外國人直接投資는 575億 달러 契約되었으나 實際投資額은 111億 달러로 前年對比 1.6倍増加하였다. 그러나 借款導入 實績은 低調해 6.8%(73.6億 달러)増加에 그쳤다.

〈 表 IV - 6 〉 中國經濟現況 (1988~1991年)

	單 位	1988	1989	1990	1991
人口 (増加率)	萬 名 %	111,026 15.73	111,191 15.04	114,333 14.39	115,823 12.98
國民總生産(經常價格) (實質經濟成長率)	億 元 %	14,018 11.0	15,918 4.0	17,686 5.2	19,580 7.0
工業生産總額 (實質増加率)	億 元 %	18,225 20.8	22,017 8.5	23,924 7.8	28,225 14.2
· 重工業 (實質増加率)	億 元 %	9,245 19.4	11,254 8.9	12,111 6.2	14,429 13.9
· 輕工業 (實質増加率)	億 元 %	8,979 22.1	10,761 8.2	11,813 9.2	13,796 14.5

64) 金斗鉉, “韓·中 經濟協力の 實態와 우리의 對應”, 地域經濟, 1993.5., pp. 51~55.

農業生產總額 (實質增加率)	億 元 %	5,865 3.9	6,535 3.1	7,662 7.6	8,008 3.0
全社會 固定資產投資 (增加率)	億 元 %	4,497 22.1	4,138 -8.0	4,449 7.5	5,279 18.6
社會商品小賣買商總額 (增加率)	億 元 %	7,440 27.8	8,101 8.9	8,300 2.5	9,398 13.2
財政指數	億 元	-78.6	-92.3	-139.6	-211.1
總通貨量(M2) (增加率)	億 元 %	10,090 21.0	11,959 18.5	15,304 28.0	19,400 26.8
輸出入總額	億달러	1,027.9	1,116.8	1,154.4	1,357.0
· 輸出	億달러	475.2	525.4	620.9	719.1
(增加率)	%	20.5	10.5	18.1	15.0
· 輸入	億달러	552.8	591.4	533.4	637.9
(增加率)	%	29.9	7.0	-9.8	19.5
· 貿易指數	億달러	-77.6	-66.0	87.5	81.2
總外資導入(契約額)	億달러	160.04	114.79	120.86	178.0
· 對外借款(契約額)	億달러	98.13	51.85	50.99	63.70
· 直接投資(契約額)	億달러	52.97	56.00	65.96	110.60
小賣物價 上昇率	%	18.5	17.8	2.1	2.9
職工生活費用 上昇率	%	20.7	16.3	1.3	3.4
都市住民 平均收入	元	1,119	1,261	1,387	1,570
農村住民 平均收入	元	545	601	630	710
都·農 住民 貯蓄性預金殘額 (增加率)	億 元 %	3,802 23.1	5,147 35.4	7,034 36.7	9,110 29.5

資料：中國統計年鑑，1992年。

(2) 中國의 當面課題

中國의 改革政策은 우선 不確實性を 지적할 수 있다. 市場經濟制度를 導入함으로써 인플레이, 投機 등 經濟的 混亂과 二重價格構造의 深化 등 副作用을 招來하여 改革의 速度와 範圍에 대한 異見으로 '改革은 持續하되 調整政策은 維持한다.'는 改革派와 保守派間의 妥協을 통하여 經濟를 運營해 왔다. 中國이 經濟開

放政策을 앞으로 持續的으로 推進하고 鄧小平死後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社會主義政治體制의 特性上 突發的인 保守回歸可能性은 전혀 排除할 수는 없다. 다만 大部分의 國民이 지난 14年間の 改革成果를 肯定的으로 認定하고 있고, 中國經濟 역시 이미 西方의 資本·技術導入의 必要性和 貿易依存度深化로 改革·開放政策의 持續的 推進은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中國의 改革政策은 社會主義路線을 堅持하는 範圍內에서 推進된 것이며, 인플레 등 改革의 副作用에 따라 調整·擴大局面을 보이면서 發展될 것이다.

中央政府와 地方省間の 葛藤으로 中央과 地方間 分權化政策(輸出入權限 및 投資誘致權 등)의 推進으로 中央政府的 統制技能이 弱화되고 또한, 地方省間の 財政輸入確保를 위하여 省間 製品販賣制限 등 保護主義가 蔓延되고 있는 實情이며 軍事費 增加, 農産物買入價 引上에 따른 國庫補助金 增加(372億元), 國營企業의 赤字保全(446億元), 債務償還의 急増으로 中國의 財政赤字는 擴大되는 趨勢이다.⁶⁵⁾ 또한 中國의 總外債中 政府借款의 比重은 줄어들고 있으나, 1990年以後 國際金融機關 등의 借款이 急増하고 있어 外債元利金 償還負擔이 加重되고 있으나 外債償還負擔率(DSR)이 10.3%水準으로 危險水位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8次 5個年計劃期間의 償還外債가 總外債의 25%에 달하여 대략 20~30% 輸出入이 外債元利金償還에 支出되어야 하기 때문에 向後 外資의 圓滑한 債務管理努力이 關鍵이 되고 있다.

(3) 中國 社會主義市場經濟의 特徵

65) 金斗鉉, 上揭書, pp. 51~55.

마르크스와 엥겔스가提示한 傳統社會主義經濟의 特徵은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私有所有의 禁止), 市場原理의 否定위에 計劃經濟(無政府的 商品經濟의 排除), 勞動에 따른 分配(社會主義의 높은 段階, 通稱 共產主義段階에서는 必要에 따른 分配 즉, 資本家的 擄取의 排除)⁶⁶⁾ 그리고 自由와 平等의 保障이라는 네 가지 基本原則을 持柱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92年 14全大會에서 中國이 採擇한 所謂 ‘社會主義市場經濟’는 生産手段의 公的 所有와 勞動에 따른 分配, 共同 負役 이외에 政權의 共產黨獨占을 包含시키고 있다.⁶⁷⁾

中國이 主張하는 社會主義市場經濟는 計劃經濟에 대한 再解釋⁶⁸⁾에 바탕을 두고, 經濟的 富國策을 優先적으로 追求하며, 4個 基本路線 가운데 유독 共產黨 一黨獨裁를 強調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지 生産手段의 公的 所有라는 共有制만이 傳統社會主義와 一致할뿐, 時代的·歷史的 對內外環境變化에 復興하는 社會主義理念의 現代的 解釋을 根據로 한 發展된 概念이라 할 수 있다.⁶⁹⁾

實際로 1978年 歷史적인 改革開放發表以來 中國의 經濟體制改革은 11期 3中全會의 ‘商品生産과 商品交換認定⁷⁰⁾’ → 12期 3中全會의 ‘計劃的 商品經濟⁷¹⁾’

66) 朴贊億, 前掲書, pp. 36~37.

67) 高尚生, “社會主義 應理直汽壯稿市場經濟”, 中國經濟體制改革, 1992. 8., p. 17.

68) 計劃經濟가 곧 社會主義는 아니며, 市場메카니즘은 資本主義나 社會主義 어느 體制에도 存在할 수 있는 하나의 體制를 超越해서 存在하는 資源配分 메카니즘일 뿐이라는 主張인데, 이것이 中國의 體制改革을 志向하는 學者들이 鄧小平의 主要發言들을 根據로 만들어 낸 論理이다. 白權鎬, “中國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改革的 거래費用에 관한 小考”, 地域經濟, 1993. 7., pp. 36~37.

69) 劉國光, “爲甚麻要搞社會主義 市場經濟”, 中國經濟體制改革, 1992. 8., p. 15. 參照.

예컨데, 對外的으로는 急變하는 世界經濟秩序에의 參入이라는 命題와 對內的으로는 痼疾적인 經濟體制的 非效率性 問題解決 등이 있다.

70) 1978年 11期 3中全會에서 採擇.

71) 1987年 12期 中全會에서 採擇.

→ 13全大會의 ‘計劃과 市場의 內在的一致⁷²⁾ → 14全大會의 ‘社會主義市場經濟⁷³⁾’의 方向으로 持續적인 市場化를 追求해 왔다. 따라서, 改革開放以後 끊임없이 提起되어 온 改革의 核心主體인 計劃과 市場論爭도 13全大會以後 採擇한 計劃的 商品經濟體制下的 計劃을 主로 하고 市場을 補로 하는 經濟體制的 採擇以後 14全大會에서는 결국 市場을 爲主로 하는 方向으로 180度 轉換하고 있다.⁷⁴⁾ 이러한 一連의 計劃으로부터 市場으로의 制度的 變換過程인 體制改革過程은 各 段階에서 당시의 現實的環境과 制約條件의 影響을 考慮한 社會的 契約으로서 最適 制度的 選擇을 위한 社會的 費用의 最適化過程이라고 볼 수 있다.

市場制度的 導入은 80年代初까지만 하여도 資源配分이라는 概念이 稀薄했던 中國에서 效率的 資源配分問題가 重要하게 認識되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效率性的 側面에서 重要的 것은 市場 그 自體보다도 市場메카니즘을 導入하는 데 必要的인프라스트럭처의 整備이다. 즉 選擇된 特定の 社會的 契約을 反映하는 行爲原則(rule of game)과 制度的 裝置를 갖추는 일이다. 이를 위해 中國은 아래와 같은 5個分野에서 本格的인 市場制度的 導入을 위한 體制整備을 試圖하고 있다.⁷⁵⁾ 즉, ① 意思決定權限의 分權化이고, ② 價格信號體制的 改革이며, ③ 流通體制的 改革이고, ④ 市場制度的 育成이며, ⑤ 巨視的 調節機能으로서 中央銀行制度 確立과 豫算內 投資制度, 租稅制度 및 各種 經濟法規의 整

72) 1988年 13期 全大會 趙子陽 總書記 政治工作報告 參照.

73) 1992年 14期 全大會 江澤民 總書記 政治工作報告 參照. “改革·開放과 現代化建設의 발걸음을 加速化하여 中國特色을 지닌 社會主義事業의 더 큰 勝利를 爭取하자.”

74) 計劃메카니즘을 傳統的인 行政命令式이 아닌 ‘計劃과 市場의 結合’ 次元(NICS와 같은 資本主義式 計劃메카니즘)에서 市場메카니즘을 中心으로 하는 資源配分메카니즘으로 代替하는 方向으로 가고 있다.

75) 馬洪, “發展社會主義 市場經濟完善計劃與 市場相結合의 新體制”, 經濟管理, 1992.11., p. 6.

備 등이다.

中國이 指向하는 社會主義市場經濟의 概念과 實際를 綜合해 보면,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本質的 差異는 오직 所有制에 있으며, 市場經濟가 곧 資本主義專有物은 아니라는 主張에서 出發하고 있다.⁷⁶⁾ 즉, 市場經濟의 本質은 社會主義나 資本主義體制의 어느 곳에서든지 같다는 主張이다. 따라서 中國側의 主張만 가지고도 窮極적으로 市場經濟體制로 간다는 點에서 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라는 것이 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와 큰 差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實質적으로 프로레타리아獨裁가 共產黨 一黨獨裁體制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社會主義市場經濟란 결국 이러한 體制를 效率적으로 維持하는 데 必要한 經濟的 힘의 源泉으로서 共有制維持라는 政治的 統合論理를 表現한 것에 不過하다. 즉, 이는 統治次元에서 必要할 경우 市場經濟보다 社會主義가 優先한다는 政治優先의 論理가 여전히 有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企業設立에서의 留意事項

企業設立에서의 問題點과 對應을 보면 첫째, 合資파트너 選定과 妥當性檢討 (Feasibility Study)問題이다. 中國政府는 政府基調의 一貫性이 缺如되어 있고 法律制度의 未備로 原則만 정해 놓고 施行細則은 管使의 才量에 맞기는 것이 通례이므로 그에 대한 妥當性 與否를 重要하게 생각해야 한다.

둘째는 相談 및 契約締結時的 問題이다. 中國은 民法體系를 갖추고 있지 않은 데다가 契約의 概念과 進行過程이 다르고, 中國人의 商慣習 등이 契約締結過

76) 1992年 2月 '南巡講話'에서 鄧小平은 計劃이 많은가 하는 것이 社會主義를 本質적으로 區分하는 것이 아니라고 言及한 바 있다.

程에 큰 影響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후 紛爭이 發生할 경우를 對備하기 위하여 中國側의 相談內容을 철저히 체크하고 記錄하여, 만약의 事態에 對備하여야 한다. 또 相談이 어느 정도 進行되면 中國側은 合意書(Notes of Agreement)에 書名할 것을 要求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締結될 契約書의 範圍와 內容을 決定하고 定式契約締結이 안될 경우에 契約과 同一한 效果를 가진다. 그리고 中國企業들은 國際契約에 관한 經驗이 不足하고 契約關係法令이 未備되어 있기 때문에 契約書 自體에 虛點이 많고, 契約書 作成時에 특히 合資期間 및 期間延長事由를 明確히 할 必要가 있다.

셋째는 合作投資의 경우 多數持分이나 同等持分, 少數持分을 莫論하고 많은 問題點에 露出될 蓋然性이 크다. 問題는 이러한 合作의 特性을 잘 理解하고 이에 對應해야 한다는 點이다.⁷⁷⁾

中國에서 合作이 어려운 理由를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中國의 投資環境의 重要한 特徵 가운데 하나가 中國企業들의 行態는 매우 短期利益 指向的이고 機會主義的이다. 이것은 中國企業들의 屬性이기보다는 어떤 意味에서는 中國과 같은 急變하는 環境과 過渡期的 狀況이 만들어 낸 側面도 無視할 수 없다. 이러한 狀況에서 相對方이 少數持分일 경우는 機會主義的 可能性을 組長하는 結果를 招來할 수 있음을 銘心할 必要가 있다.

同等持分の 경우도 契約內譯에 關係없이 經營權을 둘러싼 摩擦과 投資實行以後 雙方의 資源投入에 대한 負擔을 둘러싼 摩擦 등으로 協調的 關係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兩國企業間 經濟協力の 經驗이 日淺하다는 點도 問題解決을 위한 情報不足을 加重시키고, 오히려 相互誤解를 불러일으키는 要因으로 作

77) 白權鎬, 前掲書, p. 74.

用할 憂慮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韓國側이 少數持分일 경우에는 中國側의 契約 違反 등의 狀況에 露出될 危險이 크다. 예컨대 約束한 原料의 供給線을 돌려버리거나, 主要企業情報를 遮斷함으로써 企業經營에 전혀 參與하지 못하는 경우가 發生할 수 있음을 留意해야 하며 가장 보편적인 현상은 비협조적 태도와 기업경영에 대한 방해 등으로 나타난다.

그밖에 問題로는 土地, 公共施設, 費用算定이 어렵고 특히, 中國側은 費用을 完全히 公開하지 않은 慣行이 있다. 또 中央이나 地方政府의 生産計劃을 비롯한 企業의 經營에 대한 指示나 干涉도 큰 問題이다.

(5) 法的·文化的 環境上的 問題點

첫째로 政治의 法에 대한 優位로서 中國도 社會主義國家의 特徵上 政治가 法보다 優位에 있으며, 이는 法律로 保障된 어떤 制度도 政治的判斷에 따라 變更, 廢止될 수 있음을 意味한다. 法律體制의 意味로 中國은 文化大革命期以後 모든 法律制度를 一括廢止하고 條例型式으로 單行法을 制定하여 왔으나 아직도 社會의 많은 部門에 法律制度가 未備되어 있고 經濟關係法律이 그나마 整備되고 있으나 補完이 많이 必要한 形편이다.

交易 및 投資上的 紛爭이 發生할 경우, 仲裁의 補償이 確實하지 않다는 點이다. 中國의 경우 파리에 本部를 두고 있는 國際商業會議所(ICC)에서 處理하는 商事紛爭 다음으로 世界에서 商事紛爭이 많은 나라이다.

둘째로 文化上問題로서 體制의 差異 등으로 말미암은 文化的 差異로 인해 進出時 이를 最大한 細密히 檢討해야 한다. 中國의 指導層은 아직도 所謂 '中華'로

對辯되는 優越意識을 가지고 있으며, 外資 및 技術導入은 近視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다른 側面에서는 과거 資本主義諸國에 의한 蹂躪 등을 念慮하고 있는 등 微妙한 文化的 背景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慎重한 對處 역시 要望된다.

2. 對中國直接投資 擴大方案

中國과 같은 社會主義國家에 投資하는 行爲는 各種의 商業的 危險은 물론 컨트리 리스크까지 管理하여 經營活動을 해야 함으로 企業은 對中國直接投資時 費用, 收益, 危險뿐만 아니라 重大한 政勢變化, 各種 法規의 變化, 經濟的인 變化, 通貨價値의 公式·非公式 變化까지 綜合的으로 그 對應策을 樹立해야 한다.

(1) 巨視的 擴大方案

中國體制改革의 問題는 制度變化에 따른 變環費用과 去來費用을 同時에 最小化하여야 하는 데 있다. 그러나 中國에서는 體制改革에 대한 經驗이 전혀 없고 參考할 만한 類似한 經驗도 매우 不足한 實情이다. 이는 아직 商業性이 確立되지 않은 技術과 經營 노하우를 現場에 投入하여 施行錯誤를 겪으면서 運行하는 狀況이라고 할 수 있어 對中國直接投資를 하기 전에 事前에 檢討하여야 할 것이며, 投資以前에 樹立되어야 할 方案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協議가 進行되고 있는 海運·航空·二重課稅防止 등에 관해 早速히 매듭짓되 우리 企業의 對中國進出과 國益伸張에 有利한 方向으로 設定되도록 協商의 主導權을 잡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둘째, 中國은 앞으로 政治的 側面에서는 ‘韓半島의 二分化’ 政策을 驅使하면서도, 經濟的으로는 우리에게 대해 貿易·技術移轉·市場開放 등에 대한 要求와 通商 壓力을 強化할 것으로 展望되는데, 政治·軍事大國인 中國과의 經濟交流에 있어 어떻게 實質적인 互惠平等關係를 設定, 維持할 수 있는지를 研究하여, 對備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5年間 中國이 年平均 8~9%代의 經濟成長을 계속하고 1997年 香港을 接受한다고 假定할 때, 5年後의 中國은 지금의 中國과 비교가 안 될 만큼 國力이 伸張되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韓·中間의 協商力格差도 지금 보다 훨씬 擴大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中國에 대한 過渡한 에너지·資源의 依存이나 大型投資의 年度別集中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지금까지 500萬 달러以上の 大規模 對中國投資는 北方經濟政策實務委員會가 러시아나 베트남에 대한 投資案과 함께 審査하였으나, 對中國經濟交流의 比重增大, 大型프로젝트의 政治·經濟的 危險性, 中國市場의 擴大性·多樣性 등에 비추어 볼 때 對中投資만을 審査하는 別途의 委員會의 發足を 慎重히 檢討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同委員會에는 政府의 關聯政策擔當者뿐만 아니라 學界·研究界의 中國經濟專門家와 中國의 投資關聯法規專門家들을 參席시켜서 投資前 事前調整의 專門性和 客觀性を 높이고, 經濟的·法的 紛爭의 所持를 未然에 防止할 수 있을 것이다.

네째, 지금까지의 對中國投資에서 發生된 混亂, 中國市場에서 競爭國과의 市場先占競爭深化, 對中國投資의 業種別 産業共同化·부메랑效果, 中國의 急速한 工業化로 인한 環境 및 生態界破壞 등을 勘案한 綜合對策을 마련 貿易, 投資, 技術移轉 등 各 分野別로 協議를 進行해야 할 것이다. 특히 情報募集·公有體제의 構築을 위해 日本의 경우처럼 中國內 大使館·KOTRA나 政府投資機關·商社·金融機關

支店 등을 總網羅한 '情報統制體制'를 構築하여야 할 것이고, 政府傘下에 假稱 '中國情報센터'를 設立, 公務員, 政府投資機關 任職員, 政府出演研究機關 研究員 이 中國에 出張을 다녀올 경우의 知得事項과 出張報告書를 集中保管함으로서 政策設立時나 民間企業들의 投資時 이를 閱覽·活用할 수 있는 方案도 考慮해 볼 수 있다.

(2) 微視的 擴大方案

微視的 擴大方案으로 주로 個別企業體 次元에서 投資企業 스스로가 취해야 할 몇가지 方法을 제시코자한다.

첫째, 不確實性에 대한 理解와 對應으로 中國에 投資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不確實性에 대한 대응전략의 講究이다. 이러한 不確實性은 제도적 복잡성에서 비롯되며, 그 핵심은 經濟 실체간의 교환관계가 經濟 이론 보다는 정치이론에 의해 결정되는 거래구조의 政治經濟學的 特性에서 비롯된다. 한편 不確實性을 느끼는 쪽에서 보면 中國의 관련 投資環境의 不確實性 정도는 자신의 情報募集 能力과 理解度에 의해서 그 크기가 결정된다.

이러한 情報不足과 不確實性的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 문제에 대한 接近方法을 이해할 必要가 있다. ① 국가적인 차원의 하부구조로서 정보공유체제를 시급히 구축하는 것. ② 개별기업차원의 對應戰略으로 소위 인맥이나 관계를 통해 다양한 善人關係를 유지하는 것. ③ 中國政府가 발표하는 다양한 情報를 최대한 收集 活用하는 것. ④ 不確實性을 스스로 최대한 줄이는 것 등이다.

둘째, 目標戰略을 明確히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中國側이 각각의 진출목표에 따라 差別的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의 外資導入制度와 政策執行은 中國側의 政策目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內需市場 追求型에 대하여서는 國家가 승인하는 輸入代替産業에 한해서 제한적이거나 外換問題를 選別的으로 해결해 주고, 輸出業種에 대해서는 輸出價格의 生産費에다 確定된 利益保障을 요구하는 것 등이다.⁷⁸⁾ 여기서 外換收支自體均衡의 조건이 無差別的으로 적용된다. 戰略目標은 前章에서 설명한 資源追求型和 市場追求型 그리고 效率追求型の 세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效果的이다.

세째, 妥當性 調査를 최대한 活用해야 한다. 對中國投資에서 타당성 조사는 그 결과가 조업 개시후 모든 환경관계를 제약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특히 合資의 경우 中國側 파트너가 意向書 단계에서 自己責任下에 現地政府에 제출하는 妥當性 調査報告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통상 이것이 中國側의 책임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中國側에 一任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過程은 불확실한 환경에 대해 최대한으로 情報를 모집할 수 있는 機會라는 점에서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能力을 評價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同事業에 대한 理解도와 中國政府에 대한 영향력 정도나 인맥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넷째, 總費用次元에서 妥當性을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 總費用에 計上되는 조업이후 투입되는 生産費와 一般管理費및 去來費用의 합이다. 이 가운데 生産費 항목은 원재료 가격과 人件費 그리고 間接費인 전력비와 용수·가스·사용료

78) 外資企業이 창출한 利益의 配分率에 대해 中國政府가 매우 敏感하고 강력한 統制力을 구사한다.

등으로 현지조사에서 비교적 정확한 자료를 얻을수 있다. 다만, 인건비를 勞働生産性を 고려하고 각종 수당등을 포함시켜 勞働生産性으로 환산한 實質人件費概念으로 推定하는 것과 戰略特性에 따라 換率變動에 노출되는 經濟的 換危險을 고려하는 問題가 技術的으로 따르게 된다.

이 問題에 대한 接近은 該當産業의 技術的 特性上 生産費를 확실하게 統制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與否와 去來費用을 얼마나 效果的으로 잘 統制할 수 있는가 하는 자신의 能力에 대한 判斷,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의 期待收益率을 어느 정도 保守的으로 잡을 수 있는가 하는 세가지 측면에서의 고려가 가능하다.

다섯째, 파트너 선택 전략에 있어 상대를 評價하고 理解하여야 한다. 合資企業 設立을 推進하는 경우, 協商에 임함에 있어 우리 企業들은 中國側 파트너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現地 地域政府의 有力人士를 통해서 접촉이 되는 中小企業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다. 성공적인 合作을 推進하기 위해서는 中國側 파트너 企業의 責任者를 評價하고, 理解하고, 尊重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능력있는 中國側 파트너를 찾는 데는, ① 변화에 대한 動機附與 정도, ② 개인적 能力이나 강인함 특히 變化에 對應, 批判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③ 내부적인 좋은 관계 즉, 專門家, 政治的 有力人士, 企業幹部 및 黨幹部와의 좋은 관계 정도, ④ 企業의 自主權 정도, ⑤ 中國體制의 다양한 권한배분 시스템에 대한 理解와 情報募集力 그리고 명석한 分別력 및 조직력 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契約은 慎重하게 協商은 細密하게 해야 한다. 契約을 체결하기 위

한 協商에 들어가면 가능한 한 慎重하고 細密하게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흔히 中國人은 信義를 존중하기 때문에 문서화한 계약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을 무효화 시키는 中國人들의 協商力이나 協商術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持續的인 協商에 임해야 한다. 中國側은 상호간에 신뢰감이 부족한 경우 극단적인 機會主義와 短期利益 中心에 따른 契約 不履行을 惹起할 可能性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意思傳達 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中國人들이 흔히 “위에 政策이 있으면 아래는 對策이 있다(上有政策下有對策)”고 하는 것은 機會主義의 극단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機會主義를 事前에 統制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契約이 締結된 후 操業過程에서도 계속 注意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지속적인 협상의 관념은 戰略的 變化를 豫見하는 경우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環境變化에 따른 狀況要因의 變化에 대한 相互間의 認識을 일치시키는 것이 持續的인 協商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협상력을 행사하는 데도 일정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데, 즉 認識 → 戰略 → 힘 → 管理的 統制의 순으로 協商力을 行事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이 모든 것이 相互信賴를 前提로 추진되어야 한다.

第 5 章 要約 및 結論

海外直接投資는 優位要素인 資本, 技術能力, 製品差別化能力을 포함한 마케팅능력, 經營能力등 總體的인 企業資源을 國境 넘어로 移轉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主要 海外投資對象國인 中國의 投資環境을 分析하여 보면 中國은 現在 國政最高 目標를 經濟建設에 두고 對內的으로는 經濟體制를 改革하는 한편 對外的으로는 開放政策을 펴나가고 있다.

1979년 이후 中國의 直接投資에 관련한 對外開放을 살펴보면, 對外開放의 핵심인 外資導入政策과, 直接投資關聯法規의 整備, 그리고 外換管理制度의 調整 및 開放地域의 漸進的 擴大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外國人 直接投資 現況을 살펴 보면 投資形態別로는 合資企業이 58.7%, 國家別 投資現況은 홍콩과 마카오가 62.2%, 地域別로는 華南地域에 46.7%로 가장 많이 集中되어 있으며, 業種別로는 製造業이 90.6%를 차지한다.

韓國企業의 對中國直接投資는 製造業部門에 集中되어 있으며 渤海灣地域(50%)과 東北 3省地域(38.0%)을 중심으로 100萬 달러미만의 小規模投資에 集中되어 있고 1992년에는 269件, 2億 1,361萬 달러로 急增하여 單一基準으로는 中國이 韓國의 最大投資對象國으로 浮上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中央政府와 地方省間의 葛藤에 따른 中央과 地方間 分權化政策(輸出權限 및 投資誘致權 등)의 推進으로 中央政府의 統制機能이 弱화되고 또한, 地方省間의 財政收入確保를 위하여 省間 製品販賣制限 등 保護主義가 蔓延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상과 같이 社會主義國家인 中國에 投資하는 行爲는 各種의 商業的 危險

은 물론 컨트리 리스크까지 管理하여 經營活動을 해야함으로 公式·非公式變化까지 綜合적으로 그 對應策을 樹立해야 하며 이런점에서 볼 때 對中國 直接投資의 事前的 擴大方案으로 첫째, 現在 協議가 進行되고 있는 二重課稅防止協定の 早速한 매듭과 둘째, 中國은 앞으로 政治的側面에서는 ‘韓半島의 二分化’ 政策을 구사하면서도, 經濟的으로는 우리에게 대해 貿易·技術移轉·市場開放 등에 대한 要求와 通商壓力을 強化할 것으로 전망되어 中國에 대한 過渡한 에너지·資源의 依存이나 大型投資의 集中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500萬 달러 以上の 大規模 對中國投資는 對中國投資만을 審査하는 別途의 委員會의 發足を 慎重히 檢討해야 할 것이며, 日本의 경우처럼 中國內 大使館·政府投資機關·商社·金融機關支店 등을 總網羅한 ‘情報統制體制’를 構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對中國直接投資을 위해서는 內部的으로는 國內 産業構造調整의 加速化와 함께 外部的으로는 中國內의 安定的인 市場基盤을 確保해야 하겠다.

國內 産業構造調整을 위해서 比較劣位로 접어들고 있는 産業 즉, 限界産業이라고 할 수 있는 産業부터 順次的으로 中國에 投資를 推進하고 中國內 安定的인 市場基盤을 確保하기 위해 內需指向型 對中國投資가 보다 擴大되어야 하며 이런 對中國 投資方案을 具體적으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2年末까지 全體 對中國直接投資의 件數中 製造業이 94.6%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中에서도 纖維, 衣類, 신발, 皮革이 主從을 이루고 있어 아직까지 中國의 값싼 勞動力의 利用이나 先進國의 輸入쿼터를 피하기 위한 迂廻輸出基地로 利用하는 것이 韓國의 對中國 投資企業들의 重要한 投資動機로 볼 수 있다. 이는 豊富한 中國의 原資材를 投入하고 低廉한 勞動力을 利用, 中國에서 現地生産하여, 各種 先進國의 쿼터制限을 받지 않고 輸出하는 것으로서 주로

신발類와 같이 製品이 標準化되고 技術水準이 크게 높지 않은 産業에서 適用할 수 있는 方案이다.

둘째, 中國은 1990年 12月 “外商投資企業 및 外國所得法”을 制定하여 從來의 獨自企業 所得稅率 20~40%의 5段階累進稅率이 統一稅法으로 合作 및 合資 그리고 獨自企業 모두 30%의 稅率로 統一하였기 때문에 合資企業이 바람직스러우며 1991년까지 外國人 對中國投資 類型을 보아도 合資企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셋째, 韓國企業의 對中國投資는 初期段階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投資進出하여 中國에서의 成功 및 失敗經驗이 많은 美國 및 日本 등의 事例分析을 통하여 事業의 妥當性を 檢討하여 보다 慎重히 對處할 수 있는 能力을 向上시키고 民間企業 및 政府次元에서 直接投資의 諸般與件 등을 마련하여 事前計劃下에 段階적으로 實施되어야 한다.

結論적으로 對中國直接投資의 基本方向은 國內에서 競爭力을 점차 잃어가는 企業들의 生産基地를 보다 積極적으로 中國으로 移轉할 것과 함께 內需市場 追求型 對中國 直接投資를 보다 活性化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國 內 文 獻

金 新, 國際經營學, 博英社, 1993. 3.

朴鍾植, 國際經濟學, 貿易經營社, 1987.

潘柄吉, 國際經營論, 博英社, 1986.

稻垣清, 李殷浩 譯, 中國의 投資環境, 每日經濟新聞社, 1989. 7.

방호열, 國際經營學, 法文社, 1993. 3.

白權鎬, 投資事例로 본 對中國 投資戰略,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12.

李德彬 著, 梁必承·尹貞粉 譯, 中華人民共和國 經濟史(I), 教保文庫, 1989.

李德彬 著, 梁必承·尹貞粉 譯, 中華人民共和國 經濟史(II), 教保文庫, 1989.

李相俊, 中國經濟論, 博英社, 1989.

鄭求鉉, 國際經營學, 法文社, 1991.

高正植, “中國의 對外開放과 貿易管理體制 改革”, 產業研究院, 1989. 2.

金斗鉉, “韓·中 經濟協力の 實態와 우리의 對應”, 地域經濟, 1993. 5.

金柄淳,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 經營과 技術뉴스, 1989.

金愛榮, “海外直接投資企業의 財務戰略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弘益大學校 大學院, 1990.

김태원, “韓·中 修交와 經濟交流展望”, 月刊 三星經濟, 1992. 10.

朴贊億, “社會主義 經濟改革理論과 中國의 經濟改革”,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9.

蘇致馨, “韓國의 對中國 交流方案”, 韓國과 共產圈,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11.

申泰用 外, “中國交易總監 (投資編)”, 產業研究院, 1989.

安鍾石, “對中國投資의 現況과 改善方向”, 地域經濟, 1993.

楊平變, “中國直接投資導入 政策의 變化와 外資導入現況”, 北方經濟, 1992.5.

柳在鎬, “우리 나라의 海外直接投資에 관한 研究”, 建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4.

劉鍾七, “韓國의 對中國直接投資 增進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0.6.

韓昌晏, “韓國企業의 對中國直接投資 方案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經營大學
院, 碩士學位論文, 1990.6.

許俊榮, “韓國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
文, 1985.

對外經濟政策研究院, 中國便覽, 1992, 1993.

大韓貿易振興公社, 中國投資環境의 새로운 眺望, 1991.

_____, 中國, 1990.6.

法務部, 中國의 貿易 및 投資關係法, 法務資料 第105輯, 1988.

韓國貿易協會, 問答式 中國投資案內, 韓國貿易協會, 1990.12.

_____, 中國의 經濟關係法 第1~6輯, 韓國貿易協會, 1985~1990.

_____, 貿易年鑑, 1993.

韓國輸出入銀行, 中國 現地投資事業의 問題點과 對應方向, 1989.12.

_____, 調查 第1部, 臺灣 및 中國의 最近 經濟動向과 主要 經濟施
策, 991.7.

2. 外國文獻

馬 洪, “發展社會主義 市場經濟完善計劃與 市場相結合的 新體制”, *經濟管理*, 1992. 11.

劉國光, “爲甚麼要搞社會主義 市場經濟”, *中國經濟體制改革*, 1992. 8.

津田昇, *輸出マ-ケテソフ論*, 東京, 1974.

國家統計局 編, *中國統計年鑑*,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1991, 1992.

Buckly, P. T, and Casson, M., *The Futur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New York: Holmes & Publishers), 1976, pp. 36~45

Caves, R. E.,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 1~3.

Hood, N and Young, S., “The Economic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Long-man, 1979, pp. 58~59.

Kindleberger and Lindert, *International Economics*, Richard, D. Irwin, Inc, 6th, ed., 1978, pp. 454~455.

Kindleberger, C. P., *International Economics*, 3rd, 1963, pp. 404~405.

Kiyoshi, K., *Direct Foreign Investment: A Japanese Multinational Business Operations* (London: Croom Helm 1978), pp. 9~19

Wells, L. T, Jr., *Third World Multinationals: The Rise of Foreign Inves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83, pp. 3~4.

ABSTRACT

**A study on the expansible plan for Korea's direct
investment in China**

**Kim Kwang Bea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Overseas direct investment is to transfer the whole assets of an enterprise such as capital which is an advantageous factor, technical power, marketing skills which include product differentiation strategy, and business policies to foreign countries.

The result achiev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vestment conditions of China is that China is now pushing forward the reformation of its financial system domestically while driving an open-door policy, concentrating on the economic construction, the first goal of the government.

The (foreign) open-door policy related to direct investment of China since 1979, covers such matters as the induction of foreign capital, the arrangement of regulations related to direct investment, the institutional adjustment of foreign exchange control and the step by step extension of regions to be door-opened.

After researching the present condition of foreigners' direct

investment, I achieved such results as follows :

First, 58.7% of all the direct investment was made by jointstock companies, secondly, 62.2% of all was made by Hong Kong and Macao, and thirdly, manufacturing industry took 90.6% of all investment.

A large percentage of investment in China is small-scale and therefore its amount is less than 1 million dollars toward the regions like Bal-Hae gulf(50%) and three departments of north-east (38.0%).

In 1992, its amount invested greatly jumped up to 2 hundred millions and 1.361 dollars for 269 cases.

This shows that China has become the greatest investing country of Korea in terms of a single standard, and it is expected that much more investment will be made in the future.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departments brought about the power-decentralizing policy such as the right to export and import, and the right to induce investment.

In this process, the controlling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became weakened, and, to secure the financial income of local departments, protective measures which include the restriction of product-selling of local departments are being applied.

As I stated above, the act of investment in China, a socialist country not only risks business troubles of various kinds, but also must be made under supervision.

For that reason, comprehensive measures have to be taken to cope with the official or unofficial change of situation.

Besides, Korea needs to secure stabilized marketing base in China together with the acceleration of structural adjustment of national industry.

In an effort to adjust the structure of national industry, sequential promotion of investment in China should start with the marginal industry which is getting comparative disadvantage.

And, domestic demand-oriented investment is supposed to be increased to secure the stabilized marketing base in China.